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7인	2인
재적임원	7인	2인
참석임원	7인	2인

I. 회의일시 : 2025년 10월 27일(월요일) 오전 11: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5년 10월 17일 서면통보)

II. 장 소 :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회회의실(대진대학교 본관 3층)

III. 임원 출결 사항

○참석임원

- 이 사(7 인) : 윤은도, 박광훈, 이태열, 김화옥, 김옥, 조태형, 한인희
- 감 사(2 인) : 윤갑중, 노기팔

○결석임원

- 이 사(0 인) : 없음
- 감 사(0 인) : 없음

○참석직원 : 백학문 법인사무국 사무국장(간사)

IV. 부의안건

1. 학교법인 및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안
2. 학교법인 및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예비비 및 예산 전용 집행 결과 보고
3. 대진대학교 학교 기업 설치 안
4. 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및 개정 안
5. 대진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설 및 정원 조정 안
6. 대진대학교 생활관장 임용 안
7. 대진대학교 2026.03.01.일자 전임교원 최초 재임용 안
8. 대진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충원 계획 안
9. 대진대학교 행복기숙사 직영 전환 및 기채 허가에 관한 건
10.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불용 처리 안

V. 회의내용

간서명	김 옥	한 인 희	노 기 팔
-----	-----	-------	-------

윤은도 이사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최를 선언하다. 당초 개최 통지한 내용대로 이사회를 진행한다.

윤은도 이사장 : 제1호 의안으로 '학교법인 및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1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조태형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한인희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호 의안에 대하여 조태형 이사께서 동의하고 한인희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이사,
김옥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호의 의안인 '학교법인 및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안'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다 음 -

- 1.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세출 각각 24,715,643,000원(이백사십칠억일천오백육십사만삼천원)
- 2.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세출 각각 112,864,849,000원(일천일백이십팔억육천사백팔십사만구천원)
등록금회계는 세입, 세출 각각 64,025,639,000원(육백사십억이천오백육십삼만구천원)
비등록금회계는 세입, 세출

간서명	김 옥	한 인 희	노 기 팔
-----	-----	-------	-------

각각 48,839,210,000원(사백팔십팔억삼천구백이십일만원)

- 이 상 -

윤은도 이사장 : 제2호 의안으로 '학교법인 및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예비비 및 예산 전용 집행 결과 보고'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2호의 의안으로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에게 제2호의 의안인 '학교법인 및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예비비 및 예산 전용 집행 결과 보고' 를 붙임과 같이 보고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3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학교 기업 설치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3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이태열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박광훈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3호 의안에 대하여 이태열 이사께서 동의하고 박광훈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이사,
김옥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3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학교 기업 설치 안'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다 음 -

간서명	김 옥	한인희	노기팔
-----	-----	-----	-----

- 신설 조직(부서명) : 학교기업팀(소속: 대진대학교 총무처 산하)
신설일 : 2025.10.27.

- 이 상 -

윤은도 이사장 : 제4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및 개정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4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김화옥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김 옥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4호 의안에 대하여 김화옥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옥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이사,
김옥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4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및 개정 안’ 은 불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5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설 및 정원 조정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5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박광훈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조태형 이사 : 재청하다.

간서명	김 옥	한인희	노기팔
-----	-----	-----	-----

윤은도 이사장 : 제5호 의안에 대하여 박광훈 이사께서 동의하고 조태형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이사,
김옥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5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설 및 정원 조정 안' 은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6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생활관장 임용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6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이태열 이사 : 대진대학교 행정조직 정비 후 임용 할 것을 제안하다.

한인희 이사 : 제안에 동의하다.

김 옥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6호 의안에 대하여 이태열 이사께서 제안하고 한인희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옥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이사,
김옥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간서명	김 옥	한인희	노기팔
-----	-----	-----	-----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6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생활관장 임용 안’ 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7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2026.03.01.일자 전임교원 최초 재임용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7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김화옥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김 옥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7호 의안에 대하여 김화옥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옥 이사께서 재청 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이사,
김옥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7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2026.03.01.일자 전임교원 최초 재임용 안’ 은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8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충원 계획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8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김 옥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한인희 이사 : 재청하다.

간서명	김 옥	한인희	노기팔
-----	-----	-----	-----

윤은도 이사장 : 제8호 의안에 대하여 김옥 이사께서 동의하고 한인희 이사께서 재청 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이사,
김옥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8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충원 계획 안’ 은 불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9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행복기숙사 직영 전환 및 기채 허가에 관한 건’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9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김화옥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이태열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9호 의안에 대하여 김화옥 이사께서 동의하고 이태열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이사,
김옥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9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행복기숙사 직영 전환 및 기채 허가에 관한 건’ 은 불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서명	김 옥	한인희	노기팔
-----	-----	-----	-----

윤은도 이사장 : 제10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불용 처리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10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조태형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박광훈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0호 의안에 대하여 조태형 이사께서 동의하고 박광훈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이사, 김옥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0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불용 처리 안' 은 불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이사회의를 간서명 대표임원 선임(안)입니다.

이태열 이사 : 이사회의를 간서명 대표임원으로 김옥 이사, 한인희 이사, 노기팔 감사를 선임할 것을 동의하다.

박광훈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이사회의를 대표임원으로 김옥 이사, 한인희 이사, 노기팔 감사로 선임할 것을 이태열 이사께서 동의하고 박광훈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간서명	김 옥	한인희	노 기 팔
-----	-----	-----	-------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이사,
김옥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이사회의를 간서명 대표임원으로 김옥 이사,
한인희 이사, 노기팔 감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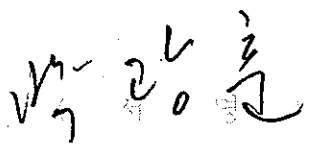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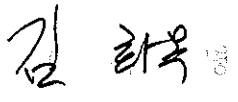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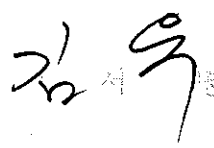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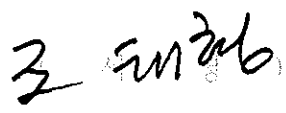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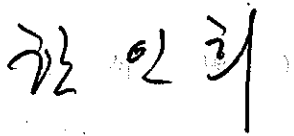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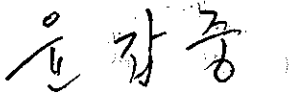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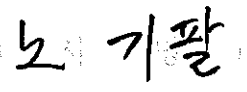
윤은도 이사장 : 기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11:30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회

간서명	김 옥	한인희	노 기 팔
-----	-----	-----	-------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 날인하다.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	사	장	윤	은	도	
	이	사	박	광	훈		
	이	사	이	태	열	이	
	이	사	김	화	욱		
	이	사	김		욱		
	이	사	조	태	형		
	이	사	한	인	희		
감	사	윤	갑	중			
감	사	노	기	팔			

2025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대진대학교 예비비 및 예산전용 집행결과 보고

■ 예산 전용

- 전용 기간 : 2025.03.01. ~ 2025.08.28.
- 전용 내역 : 81,910,000원(8건)

[단위 : 천원]

회계단위		전용건수	전용금액	비고
법인일반		1	19,200	
대학	등록금	1	23,731	
	비등록금	6	38,979	
합 계		8	81,910	

■ 예비비 집행

- 집행 기간 : 2025.03.01. ~ 2025.08.28.
- 집행 내역 : 743,242,000원(13건)

[단위 : 천원]

회계단위		편성금액	집행금액	잔액
대학	등록금	454,266	303,285	-454,266
	비등록금	525,730	439,957	-525,730
합 계		979,996	743,242	-979,996

간서명	김옥	권인희	노기팔
-----	----	-----	-----

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및 개정

규정 개정

학칙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장 학교기업 <장 신설 2025.10.27.>

제94조(학교기업) ① 본교 및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학교기업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27.>

②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0.27.>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김욱	한민희	노기팔
-----	----	-----	-----

교원인사 규정

교원인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승진임용원칙) ① (현행과 동일)

1 ~ 3. (현행과 동일)

4. 필수업적 기준

가. 국내학술지 A급 이상 논문

- 인문/사회/예술계열 : 600점

- 자연/공학계열 : 750점

나. 국제학술지 전문(SCI급) 논문은 가호의 50% 이상

단, 인문/사회/예술계열의 경우 외부연구비로 대체 가능

다. 외부연구비 : 본교 산학협력단을 경유한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과제 또는 정부와 지자체 용역(공기업 포함) <개정2025.10.27.>

- 인문/사회/예술계열 : 20,000,000원

단, 인문/예술계열의 경우 국제학술지 전문(SCI급) 논문으로 대체 가능 <개정2025.10.27.>

- 자연/공학계열 : 60,000,000원

- 본교 산학협력단을 경유한 일반연구(민간수탁, 산업체 포함)과제로 대체 또는 합산하는 경우 2배의 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2025.10.27.>

라.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실기트랙의 경우, [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연구업적 평가기준 2-2, 예술분야 평가표]에 따른 국내A급 이상 900점을 취득할 경우 필수 업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2025.10.27.>

② (현행과 동일)

1 ~ 2. (현행과 동일)

3. 필수업적 기준 : 제21조 ①항 4호 필수업적 기준의 200% 이상 충족(단, 외부연구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한한다.) <개정2025.10.27.>

제34조(재임용 요건)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필수업적 기준

가 ~ 다. (현행과 동일)

라.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인문/예술계열의 경우 국내학술지 A급(등재후보지 제외) 600점 이상인 경우 필수업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단, 실기트랙의 경우 [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연구업적 평가기준 2-2, 예술분야 평가표]에 따른 국내 A급이상 600점을 취득할 경우 필수업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27.>

간서명	김욱	한인희	노기팔
-----	----	-----	-----

제38조(승급)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필수업적 기준 : 연구업적 기준점수의 50%이상은 국내학술지 A급 이상의 논문 또는 외부연구비로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연구업적 기준점수의 50%이상은 국내학술지A급(등재후보지 제외)이상의 논문 또는 외부연구비로 충족하여야 한다. 단, 실기트랙 교원의 경우[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연구업적 평가기준 2-2. 예술분야 평가표]에 따른 국내A급 이상의 업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나.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제안서(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를 본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승급기준일로부터 2년전 이내 1회 이상 제출한 실적(다년 과제 진행중에는 제출로 같음)이 있어야 한다. 단, 본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수주한 과제(정부와 지자체 용역, 민간 산업체 수탁)로서 연 누적 1,000만원 이상의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5.10.27.>

3. (현행과 동일)

4. 정년이 보장된 교원이 승급심사(구, 주기평가)에서 탈락된 이력이 없는 경우 정년퇴직 예정일로부터 4년전 이후에는 승급심사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27.>

5. (현행과 동일)

③ ~ ④ (현행과 동일)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모든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제38조(승급) 변경규정 시행 후 2025년 9월 1일 이전 임용자의 승급평가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2020.09.01. 이전 임용된 조교수 및 부교수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자동 승급되며, 그 이후는 변경규정을 적용한다. 단, 변경규정 적용 시 업적평가 기준은 「정년트랙전임교원 업적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부칙2.(경과조치) 기준을 따른다.

(2) 2021.03.01. ~ 2025.09.01.까지 임용된 교원은 최초 1회의 승급평가는 구 규정을 적용하며, 이후에는 변경규정을 적용한다.

4. (경과조치) 제21조(승진임용원칙), 제34조(재임용 요건) 변경규정 시행 후 2025년 9월 1일 이전 임용자의 승진임용, 재임용평가는 가장 먼저 도래하는 최초 평가대상 1회에 한하여 구규정을 따르며, 그 이후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5. (경과조치) 2026. 3. 1. 현재 정년보장교원은 주기평가(정년보장교원 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변경규정 시행 후 최초 도래하는 시점의 주기평가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주기평가 기

간서명	김우	한인리	노기팔
-----	----	-----	-----

준을 미충족한 교원은 기준 충족 시까지 구 규정에 의거 주기평가를 실시하며, 2년간 승급 유예 및 직급수당 차등 지급 기준(연구업적 충족 점수별 직급수당 차등 지급 기준)에 따라 직급수당을 지급한다.

(2) 승급유예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교원은 매년 주기평가 기준 충족여부를 재심하며 미충족 시 승급유예 및 직급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3) 주기평가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는 변경규정을 적용한다.

가. 정년보장 이후 평가 기준(2020.09.01. 이전 임용 교원 적용)

구분		평가 기간	연구업적		교육 업적	봉사 업적	
			충족점수	필수요건			
1~2주기 평가		인/사/예/자/공	4년	480	2편	413	42
3주기 이상 평가	연구트랙	인/사/예/자/공	4년	320	1편	334	34
	교육트랙	인/사/예/자/공	4년	· 책임시수 상향 조정 9시수 → 13시수(초과 1시수당 10점)			34
	산학협력트랙	인/사/예	4년	· 외부연구비수혜 72,000,000원/4년 (1,000,000원/4.44점)		334	34
		자/공	4년	· 외부연구비수혜 144,000,000원/4년 (1,000,000원/2.22점)		334	34

※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한 필수업적 대체

구분	계열	필수업적(논문)	금액
외부연구비	인문/사회/예술	1.0편	30백만원
	자연/공학	1.0편	60백만원

※ 3주기 이상의 경우 트랙별 연구업적을 상호 대체할 수 있으며, 교육트랙 및 산학협력트랙의 연구업적 충족점수는 연구트랙 점수로 한다.

※ 필수 연구업적은 제21조 제4호 <별표1>의 국내A급 또는 국제 A급 학술지 게재논문을 말한다. 연구업적 충족 점수별 직급수당 차등 지급 기준(2020.09.01. 이전 임용 교원 적용)

업적비율	직급수당 적용률
100%	100%
71% ~ 99%	70%
51% ~ 70%	50%
31% ~ 50%	30%
30% 이하	0%

6. (경과조치) 부칙 4.(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1일 이전 임용교원이 2026년 3월 1일 현재 조교수 및 부교수인 경우 최초 도래하는 승진임용과 재임용평가를 각각 1회 구규정을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승진임용원칙

(1) 최소 승진소요년수

간서명	김욱	권인희	노기팔
-----	----	-----	-----

- (가) 부교수에서 교수 5년
- (나)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 (2) 연구, 교육 및 봉사업적기준
 - (가) 부교수에서 교수 : 승진임용 평가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6년 이내의 연구, 교육, 봉사업적이 각각 750점, 520점, 53점 이상이어야 함.
 - (나) 조교수에서 부교수 : 승진임용 평가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6년 이내의 연구, 교육 및 봉사업적이 900점, 624점, 63점 이상
- (3) 연구업적의 경우는 전호의 기준을 충족하되, [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 국내A급 또는 국제A급 학술지 게재논문이 다음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단 독 : 1.0편 인정
 - 2인 공동 : 0.7편 인정
 - 3인 공동 : 0.5편 인정
 - 4인 이상 : 0.3편 인정
 - 2인 이상일 경우 책임연구자(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0.8편으로 인정
 - 위의 기준은 동 호의 '가' 및 '나' 및 의 업적 산정 시에만 적용한다.
- (가) 부교수에서 교수 : 인문/사회/예체능 3.0편, 자연/공학 3.5편
- (나) 조교수에서 부교수 : 인문/사회/예체능 3.0편, 자연/공학 3.5편
- (4) 보직에 임명된 교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 업적 점수를 보직재임기간에 비례하여 가산한다.

보직명	가산 기준	가산 내용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이상	승진에 필요한 연구업적점수를 보직재임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점수	80% 가산
각 처장	승진에 필요한 연구업적점수를 보직재임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점수	80% 가산
각 실장, 각 부속기관장	승진에 필요한 연구업적 점수를 보직재임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점수	50% 가산

- (5)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교내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승진 임용에 필요한 연구업적점수를 위원회 활동기간에 비례하여 총장이 정하는 가산비율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나. 재임용 요건

- (1) 제34조(재임용 요건)에도 불구하고 2020.09.0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재임용 평가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6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부교수는 연구, 교육, 봉사업적이 각각 720점, 624점, 75점 이상
 - (나) 조교수는 연구, 교육, 봉사업적이 각각 780점, 624점, 63점 이상
- (2) 재임용과 승진임용이 동일년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회의 업적물 제출로 대체한다. 다만 재임용 평가 후 발생하는 업적물은 승진임용 예정일 70일 전까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간서명	김욱	한인취	노기팔
-----	----	-----	-----

(3) 부칙 제4의 제(4) 및 제(5)는 재임용 조건에도 준용한다.

7. (경과조치) 2025.09.01. 이전 임용된 예술계열교원 중 본인의 선택에 의한 실기트랙(미술, 만화, 게임, 디자인, 영상, 연기, (실용)음악)교원의 연구업적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연구업적 평가기준 2-2. 예술분야 평가표]의 각 분야별 업적평가 기준에 따른다.

가. 실기트랙전환 이후에는 트랙변경을 할 수 없다.

나. 실기트랙전환 후 도래하는 승진임용, 재임용 또는 호봉승급심사 평가의 경우 필수업적점수는 트랙변경시점 이후의 실기업적만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다. 실기업적의 경우 국내A급 업적은 연간 5건에 한하여 업적으로 인정한다.(단, 국내 개인전의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8. (경과조치) 2025년 9월 1일 이전 임용자 중 2026년 3월 1일자 규정 변경 이후, 부교수에서 정년보장교원으로 승진하지 못한 경우, 본 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여 구 규정을 적용한다. 유예 후 변경 규정 적용 시 경과조치에 의한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필수업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2021년 3월 1일 ~ 2025년 9월 1일 임용교원

(1) [인/사/예/자/공] 3년 유예기간 동안 구규정 '제21조 제1항 4호 가, 나, 다' 항목으로 필수업적을 충족한 부교수(단, 부교수로 재임용 후, 실기트랙으로 전환한 예술계열교원제외)

승진임용 차수	교수승진임용 연구업적점수	교수승진임용 필수연구업적 기준	
		외부연구비(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과제 또는 정부와 지자체용역)	
		인/사/예	자/공
최초 1회_본 규정 적용 (부교수 재임용 4년차)	1,200점	6,000,000원이상 포함	18,000,000원이상 포함
차기 2회_본 규정 적용 (부교수 재임용 5년차)	1,200점	12,000,000원이상 포함	36,000,000원이상 포함
차기 3회_본 규정 적용 (부교수 재임용 6년차)	1,200점	18,000,000원이상 포함	54,000,000원이상 포함
이후		변경규정 적용	

(2) [인/예] 3년 유예기간 동안 구규정 '제21조 제1항 4호 라' 항목으로 필수업적을 충족한 부교수(예술계열교원 중 실기트랙으로 전환하지 않은 부교수 또는 인문계열 부교수)

승진임용 차수	교수승진임용 연구업적점수	교수승진임용 필수연구업적 기준	
		국제학술지논문(SCI급) 논문	외부연구비
최초 1회_본 규정 적용 (부교수 재임용 4년차)	1,200점	180점 이상 포함	6,000,000원이상 포함
차기 2회_본 규정 적용 (부교수 재임용 5년차)	1,200점	360점 이상 포함	12,000,000원이상 포함
차기 3회_본 규정 적용 (부교수 재임용 6년차)	1,200점	540점 이상 포함	18,000,000원이상 포함
이후		변경규정 적용	

(3) 부교수로 재임용 후 실기트랙으로 전환한 예술계열교원이 다음을 취득한 경우 '교수

간서명	김욱	관인취	노기팔
-----	----	-----	-----

승진임용 필수업적 기준' 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승진임용 차수	교수승진임용 연구업적점수	교수승진임용 필수 연구업적 기준 국내A급이상 업적
최초 1회_본 규정 적용 (부교수 재임용 4년차)	1,200점	270점 이상 포함
차기 2회_본 규정 적용 (부교수 재임용 5년차)	1,200점	540점 이상 포함
차기 3회_본 규정 적용 (부교수 재임용 6년차)	1,200점	810점 이상 포함
이후	변경규정 적용	

나. 2020년 9월 1일 이전 임용교원

(1) 부교수(단, 부교수로 재임용 후, 실기트랙으로 전환한 예술계열교원 제외)

승진임용 차수	교수승진임용 연구업적점수	교수승진임용 필수 연구업적 기준					
		국내학술지 A급 이상 논문		국제학술지 결론 (SCI급) 논문		외부연구비(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과제 또는 정부와 지자체용역	
		인/사/예	차/공	인/사/예	차/공	인/사/예	차/공
최초 1회_본 규정 적용 (부교수 재임용 4년차)	885점 (750+(1200-750)×0.3)	180점 이상 포함	225점 이상 포함	90점 이상 포함	113점 이상 포함	6,000,000원 이상 포함	18,000,000원 이상 포함
차기 2회_본 규정 적용 (부교수 재임용 5년차)	1,020점 (750+(1200-750)×0.6)	360점 이상 포함	450점 이상 포함	180점 이상 포함	225점 이상 포함	12,000,000원 이상 포함	36,000,000원 이상 포함
차기 3회_본 규정 적용 (부교수 재임용 6년차)	1,155점 (750+(1200-750)×0.9)	540점 이상 포함	675점 이상 포함	270점 이상 포함	338점 이상 포함	18,000,000원 이상 포함	54,000,000원 이상 포함
이후	변경규정 적용						

(2) 실기트랙으로 전환한 부교수

실기트랙 전환시기	교수승진임용 연구업적점수	교수승진임용 필수 연구업적 기준 국내A급이상 업적
최초 1회_본 규정 적용 (부교수 재임용 4년차)	885점 (750+(1200-750)×0.3)	270점 이상 포함
차기 2회_본 규정 적용 (부교수 재임용 5년차)	1,020점 (750+(1200-750)×0.6)	540점 이상 포함
차기 3회_본 규정 적용 (부교수 재임용 6년차)	1,155점 (750+(1200-750)×0.9)	810점 이상 포함
이후	변경규정 적용	

간서명	김영	권인리	노기팔
-----	----	-----	-----

계약제외국인 전임교원임용 규정

계약제외국인 전임교원임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계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년트랙 외국인 전임교원이 재계약되기 위해서는 현 직위 계약기간 이내에 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 교육업적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27.>

1. 부교수(3년 기준) : 연구, 교육업적이 각각 450점 이상
<개정 2020.12.18., 2025.10.27 >

2. 조교수(2년 기준) : 연구, 교육업적이 각각 300점 이상 <개정 2025.10.27 >

④ 비정년트랙 외국인 전임교원의 재임용 기준 및 업적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25.10.27.>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조(재계약) 제3항 및 4항의 재임용 기준변경에 따라 가장 먼저 도래하는 재임용 평가는 구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간서명	김옥	관인희	노기팔
-----	----	-----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규정 (3-2-2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구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강의전담교원과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구분하며,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27 >

제5조(자격) (현행과 동일)

1 ~ 3. (현행과 동일)

4. <삭제 2025.10.27>

제9조(재임용 절차 및 심사)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기준 및 업적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25.10.27.>

1 ~ 4. <삭제 2025.10.27>

④ ~ ⑦ (현행과 동일)

제10조(승진임용)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다만,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28조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27.>

구분	계열	연구		교육	기간
		점수	필수요건		
조교수 → 부교수 승진	인/사/예	900	* 국내 A급 이상 논문 4편(600점) · 50% 이내 외부 연구비로 대체 가능 · 위 항의 외부연구비는 본교 산학협력단을 경유한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 과제 또는 정부와 지자체 용역(공기업 포함)에 한한다. 단, 본교 산학협력단을 경유한 일반연구(민간수탁, 산업체 포함)과제로 대체 또는 합산하는 경우 2배의 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900	6년
	자/공	900	* 국내 A급 이상 논문 5편(750점) · 50% 이내 외부 연구비로 대체 가능 · 위 항의 외부연구비는 본교 산학협력단을 경유한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 과제 또는 정부와 지자체 용역(공기업 포함)에 한한다. 단, 본교 산학협력단을 경유한 일반연구(민간수탁, 산업체 포함)과제로 대체 또는 합산하는 경우 2배의 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900	

- 예술계열의 경우 창작활동(발표 등)은 필수요건의 25% 이내에서 인정
- 국내 A급(한국연구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기준점수 : 150점

간 서 명	김옥	한민리	노기팔
-------	----	-----	-----

- 국내 A급이상 논문 : 국내학술지 A급과 국제학술지 A급 및 B급

⑤ (현행과 동일)

제11조(정년트랙 전환)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승진임용평가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6년 이내의 업적이 아래의 업적평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구 분	계열	연구		교육	기간
		점수	필수요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예	2,700	* 국내 A급 이상 논문 12편(1,800점) · 50% 이내 외부 연구비로 대체 가능 * 외부 연구비 또는 SCI급 논문 450점 * 위 항의 외부연구비는 본교 산학협력단을 경유한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 과제 또는 정부와 지자체 용역(공기업 포함)에 한한다. 단, 본교 산학협력단을 경유한 일반연구(민간수탁, 산업체 포함)과제로 대체 또는 합산하는 경우 2배의 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900	6년
	자/공	2,700	* 국내 A급 이상 논문 15편(2,250점) · 50% 이내 외부 연구비로 대체 가능 * SCI급 논문 600점 * 위 항의 외부연구비는 본교 산학협력단을 경유한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 과제 또는 정부와 지자체 용역(공기업 포함)에 한한다. 단, 본교 산학협력단을 경유한 일반연구(민간수탁, 산업체 포함)과제로 대체 또는 합산하는 경우 2배의 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900	

- 예술 계열의 경우 창작활동(발표 등)은 필수요건의 25% 이내에서 인정
- 국내 A급(한국연구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기준점수 : 150점
- 국내 A급 이상 논문 : 국내학술지 A급과 국제학술지 A급 및 B급

⑤ (현행과 동일)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변경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모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3. (경과조치) 2025년 9월 1일 이전 임용자는 변경 규정 시행 후 최초 도래하는 재임용 평가 1회에 한하여 구규정을 따르며, 이후 평가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4. (경과조치) 2025년 9월 1일 이전 임용자는 변경 규정 시행 후 승진/트랙전환 최초 도래 시점부터 3년간 변경규정 적용을 유예하여 구규정으로 평가하며, 이후 평가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간 서 명	김 수	한 인 희	노 기 팔
-------	-----	-------	-------

정년트랙전임교원 업적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정년트랙전임교원 업적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2025.10.27>

제3조(업적의 구분) 교원의 업적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업적 : 논문, 저서, 산학협력 및 예술분야 등의 연구활동 <개정 2025.10.27.>
- 2 ~ 3. (현행과 동일)

제5조(업적평가) ① (현행과 동일)

1. 연구업적 인정률 <개정 2025.10.27.>

구분	인정률
논문	$1/(N+2)$ 단,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의 경우 $2/(N+2)$ ※ N값에서 본교 학부 및 대학원생은 제외
저서/지식재산권/외부연구비	$1/N$ ※ N값에서 본교 학부 및 대학원생은 제외

※ 외부연구비

- 본교에 입금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산한다.
- N값은 본교 교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만 한다.

2. 외부연구비의 국내학술지 A급 논문 대체기준

- 외부연구비의 논문 필수업적 인정 비율 : 50%이하
- 적용대상 : 교원인사규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가 및 제34조 제2호의 가에 적용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연구업적 가산)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학교평가 위원활동 가산 <개정 2025.10.27.>

구분		가산점수
학교평가	대학기관평가인증	30%
	기타 학교평가	0~20%

- '학교평가'의 경우 승진/재임용/승급심사에 필요한 연구업적 점수를 위촉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점수
- 기타 세부항목에 대한 가산 비율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간서명	김옥	관인취	노기팔
-----	----	-----	-----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조(적용범위) 제2항의 삭제에 따라 2020년 9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은 2031.02.28까지 아래의 업적평가 기준을 따른다. 단, 별도로 특약사항이 있는 교원은 2031.02.28까지 계약상의 인정률로 계산한다.

가. 연구업적점수의 계산(인정율)

1) 국제A급 이상 논문(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기간	연구자수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	공동저자
2026.3.1.	1인	논문 기준 점수 × 1	
	2인		
~ 2028.2.29.	3인	논문 기준 점수 × 0.8	논문 기준 점수 × 0.7
	4인 이상		논문 기준 점수 × 0.5
2028.3.1.	1인	논문 기준 점수 × 1	
	2인		
~ 2030.2.28.	3인	논문 기준 점수 × 0.6	논문 기준 점수 × 0.4
	4인 이상		논문 기준 점수 × 0.5
2030.3.1.	1인	논문 기준 점수 × 1	
	2인		
~ 2031.2.28.	3인	논문 기준 점수 × 0.55	논문 기준 점수 × 0.3
	4인 이상		논문 기준 점수 × 0.45
2031.3.1. 이후	변경규정을 따름		

2) 그 외 논문(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기간	연구자수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	공동저자
2026.3.1.	1인	논문 기준 점수 × 1	
	2인		
~ 2028.2.29.	3인	논문 기준 점수 × 0.9	논문 기준 점수 × 0.7
	4인 이상		논문 기준 점수 × 0.7
2028.3.1.	1인	논문 기준 점수 × 1	
	2인		
~ 2030.2.28.	3인	논문 기준 점수 × 0.7	논문 기준 점수 × 0.5
	4인 이상		논문 기준 점수 × 0.6
2030.3.1.	1인	논문 기준 점수 × 1	
	2인		
~ 2031.2.28.	3인	논문 기준 점수 × 0.55	논문 기준 점수 × 0.35
	4인 이상		논문 기준 점수 × 0.45
2031.3.1. 이후	변경규정을 따름		

나. 연구업적 평가

1) 평가대상 연구업적물 인정기준

가) 논문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으로서의 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간서명	김옥	관인리	노기팔
-----	----	-----	-----

- 나) 저자의 이론을 정리, 체계화한 저서나 중·고등학교의 1종 교과용 도서는 인정하되 강의용 자료와 참고서 등은 연구업적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예·체능계 전공은 총장이 인정하는 실적조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기관의 확인서 등 관계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 라) 전문대학 교재편찬위원회에서 집필된 교재
- 마)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은 인정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1회에 한하여 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
- 바) 상기 가, 나, 다의 연구업적물은 저서, 학회지, 논문집, 학술적인 정기간행물에 발표(예능계의 경우는 연구·발표·전시·입선 등)된 것이어야 하며 일간지 및 교내신문에 발표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사) 대학에서 총장, 부총장, 학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를 대학교원으로 신규임용하거나, 대학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던 자를 퇴직시에 재직하였던 직명으로 다시 신규임용할 경우에는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거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을 인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2) 연구업적 평가기준

구분	내 용	비 고	인문/사회/자연	공학	예술체육
논문	국제학술지 A급(5)	SCI, SCIE, SSCI, A&HCI (2인 이상일 경우 책임연구자는 80%로 인정(59))	300	300	300
		SCOPUS	180	180	180
	국제학술지 B급(6)	국제학술지로서 A급을 제외한 것 (OECD 국가 및 러시아, 중국에서 발간된 것에 한함. 단, 중국학술지는 별도 목록으로 정함(7))	120	120	120
	국내학술지 A급(9)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150	120	120
	국내학술지 B급(10)	심사체계를 갖추고 연2회 이상 발간하는 학진 등록 학회의 학술지	80	80	80
	기타 학술지(11)	기타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학술지	30	30	30
저서	국제 전문저서(19)		280	280	280
	국내 전문저서(20)		120	120	120
	번역 초역	한국어를 외국어로	120	120	120
	번역 초역	외국어를 한국어로	100	100	100
	대학교재(23)		80	80	80
	편저(24)		60	60	60
	중고교 교재(25)		60	60	60
	개정판	초판의 유형에 따르며 1회(중역포함)에 한함	50%	50%	50%
학술활동	A급 국제학술대회 프로시딩(38) 발표	A급 국제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34)	60	50	60
	A급 국제학술대회 초록(39), 포스터(40) 발표		20	20	20
	기타 국제학술대회 프로시딩(38) 발표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학술대회(35)	30	30	30
	기타 국제학술대회 초록(39), 포스터(40) 발표		10	10	10
	국내 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를 발간하는 학회	20	20

간 서 명	김 옥	한인하	노기팔
-------	-----	-----	-----

구분	내 용	비 고	인문/사 회/자연	공학	예술 체육
	프로시딩(38) 발표	주최(36)	10	10	10
	국내 학술대회 초록(39), 포스터(40) 발표				
	기타 학술대회(37) 프로시딩(38) 발표		10	10	10
지식 재산권	국제특허 등록(45)	G7 국가에 한함	150	150	150
	국내특허 등록(46)	G7 국가 이외에서 등록된 국제특허 포함	100	100	100
	실용신안 등록		50	50	50
	소프트웨어, 상표, 의장 등록		30	30	30
	연구결과 산업체 적용(기술이전)(48)	학교에 100만원 수익금액 당	10	10	10
외부 연구비 수혜 (49-1)	100만원 미만	과학재단, 한국연구재단 수혜 및 R&D과제 계약인 경우 금액의 2배 인정(단, 상기 연구비외에 산학협력 단 간접비(일반관리비 등 포함)가 발생하는 교육운영수익 및 기타산학협력(지원금)수익의 경우 연구비 업적점수의 30%를 반영한다.)	5	2.5	5
	100만원 이상서 100만원당		5	2.5	5
수상	국제 학술수상(54) 및 문학상(55)		200	200	200
	학술관련 국가포상 및 훈장(56)		100	100	100

<세부기준 및 주석 명시 사항>

- (1) 업적기준일자는 학회지의 경우 발간일자, 저서의 경우 출판일자, 학술대회 및 공연·전시·발표의 경우 해당 전시 및 발표일자,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일자로 함
- (2) 학술지의 학술논문은 그 형식과 체계가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형식을 지닌 것이어야 하며 해당 전공분야에 한함
- (3) 학술지의 등급은 해당 논문이 발간된 시기의 등재여부를 기준으로 함
- (4) 국제학술지: 편집위원회 국외학자가 30%이상 참여하며, 외국어로 발간되는 것
- (5) 국제학술지 A급: SCI(Expanded 포함), SSCI, A&HCI,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 (6) 국제학술지 B급: A급 이외의 국제학술지(OECD국가, 중국과 러시아에 한함)
- (7) 중국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중 인정대상이 되는 학술지는 별도의 목록으로 정하되, 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되며, 심사체도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 한함
- (8) 국내학술지: 심사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학술지
- (9) 국내학술지 A급: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 (10) 국내학술지 B급: 심사체계를 갖추고 연 2회 이상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 (11) 기타 학술지: 국제학술지 A, B급 및 국내학술지 A, B급에 해당하지 않는 학술지
- (12) 동일 내용의 논문을 상이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중복 인정되지 아니하며, 유리한 점수 1건만 인정

간 서 명	김옥	김민익	노기팔
-------	----	-----	-----

- (13) 학술회의 주제발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중복 인정되지 아니하며, 유리한 점수 1건만 인정
- (14) 학술지의 논평, 서평 및 논문번역은 인정하지 아니함
- (15) 역주, 주석은 관련분야에 한하며 발표된 학술지 성격에 따름
- (16) 박사학위논문은 국내학술지 A급으로 인정하며 석사학위논문은 인정하지 아니함
- (17) 단행본 중 논문은 저서로 인정하며 저자가 장(Chapter)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18) 저서는 공인된 출판사에서 발간한 것으로서 소속 전공분야에 한함
- (19) 국제전문저서: 전공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외국어로 국외에서 발간된 것
- (20) 국내전문저서: 전공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발간된 것
- (21) 번역서: 이미 출간된 외국서를 한국어로 또는 국내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출판된 서적
- (22) 번역서는 초역을 기준으로 하며 중역의 경우에는 해당 점수의 50%를 인정
- (23) 대학교재: 국외 또는 국내의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출판된 것을 말하며 학교출판사 발간의 것을 포함
- (24) 편저: 여러 사람의 이론을 한권의 책으로 엮어 발간한 것을 말하며 ISBN Number가 있는 경우에 한함
- (25) 중고교교재: 중등교육기관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사용할 목적으로 발간된 것
- (26) 문제집, 교양서, 사전편저는 불인정
- (27) 실험지침서는 대학교재로서 인정
- (28) 역주본, 주석본은 관련분야에 한하여 국내 전문저서로 인정
- (29) 개정판은 30% 이상 내용이 개정된 것에 한하며 1회에 한하여 인정
- (30) 원격교육 교안은 불인정
- (31) 소프트웨어 및 전자교과서는 교재로서 평가
- (32) 신문, 잡지 등의 투고는 불인정
- (33) 학술대회: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행사
- (34) A급 국제학술대회: A급 국제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 주관 학술대회
- (35) 기타 국제학술대회: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학술대회
- (36) 국내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 발간하는 학회 주관
- (37) 기타학술대회: 회원규모가 전국적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 (38) 프로시딩(Proceeding): 완결된 논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프로그램과 인쇄물로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단, 포스터 발표가 프로시딩으로서 채택된 경우에도 프로시딩으로 인정함.
- (39) 초록(Abstract): 해당 프로그램 또는 인쇄물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40) 포스터(Poster): 포스터 발표를 하는 학회에서 해당 프로그램 또는 인쇄물에 나타

간서명	김옥	관인희	노기팔
-----	----	-----	-----

나 있어야 함

- (41) 프로시딩을 모아 논문집을 출간한 경우에는 불인정
- (42) 학술대회 좌장 및 토론은 불인정
- (43) 초청강연이나 세미나, 워크숍 발표는 불인정
- (44) 지식재산권: 등록된 것에 한하며, 발명자와 출원자만 인정. 단,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권리권자가 본교인 경우에만 인정함
- (45) 국제특허: G7 국가에 한함
- (46) 국내특허: 특허청에 등록된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G7 국가 이외의 국가에 등록된 국제특허도 국내특허로 인정
- (47) 동일한 특허를 다른 나라(국내 포함)에 출원한 경우 1개만 인정
- (48) 기술이전: 본교 산학협력단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한함. 단, 특허권자에 대한 직무발명규정, 보상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효력을 발휘함
- (49) 연구비수혜: 대학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계약한 경우에 한하며, 학교에 입금된 연구비를 기준으로 함(단, 여기에서 연구비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표2>의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수익의 연구수익을 말한다.)
- (49-1) R&D과제 : 연구재단이나 정부기관에서 수주한 사업으로 연구결과물이 본교에 귀속되는 사업
- (50) 연구비를 교내 교원이 공동으로 수혜한 경우에는 1/n로 평가
- (51) 기술지원 수당 등의 실무용역성 연구비는 제외
- (52) 연구비 수혜금액은 본교에 연구비가 입금된 일자틀 기준으로 함
- (53) 한국연구재단 지원하는 연구비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배를 적용
- (54) 국제학술 수상: 국제학술지 A등급의 논문을 발간하는 학회 등, 저명한 국제학술단체에서 수상한 경우
- (55) 국제 문학상: 저명한 국제 문학단체에서 수상한 경우
- (56) 학술관련 국가 포장 및 훈장: 국가에서 학술관련 표창을 수여한 경우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나 학회, 대학 등에서의 수상은 제외
- (57) 인정률에 있어서 모든 점수는 단독인 경우 기준이며, 2인 공동인 경우 70%, 3인 공동인 경우 50%, 4인 이상 공동인 경우 30%를 적용함. 단,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58) 국제학술지 A급 논문을 제외한 연구실적에 대하여 책임연구자(제1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공동연구인 경우 기준점수의 20%를 가산함. 단, 해당 연구성과물을 통하여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함
- (59) 국제학술지 A급 논문의 책임연구자(제1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 - Corresponding Author)는 1인 단독인 경우 100%, 2인 이상 공동연구인 경우에 80%를 적용. 단, 해당 연구성과물을 통하여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함

간 서 명	김 욱	관 인 의	노 기 괄
-------	-----	-------	-------

- (60) 학술논문의 경우 첫 페이지 상단에 기재된 명단은 공동연구원으로 인정. 단, 본교에 소속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공동저자에서 제외함
- (61) 중복 또는 표절된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평가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연구업적을 취소함
- (62) 중복된 연구업적이라 함은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업적과 연구방법 및 내용이 일치하여 주요결론이 유사한 연구업적을 말함
- (63) 표절된 연구업적이라 함은 타인이 이미 발표한 업적과 연구방법 및 내용이 일치하여 주요결론이 유사한 연구업적을 말함
- (64) 예능계열의 연구업적의 기산일은 공연, 발표, 전시 또는 수상한 일자를 기준으로 함

3) 창작, 건축설계 및 예체능 분야 연구업적 평가

가) 창작활동 분야 (국문학과, 영문학과, 문예창작과 및 연극영화과 이론전공에 한함)

구분	내 용	비 고	점수
창작활동	창작집 (단행본)	길이와 기발표된 작품의 비율 고려	150
	창작작품(평론, 산문)	중앙문예지에 발표된 것	60
	창작작품(평론, 산문)	일반문예지에 발표된 것	40
	소설, 희곡(드라마, 시나리오) 장편	중앙문예지에 발표된 것	200
	소설, 희곡(드라마, 시나리오) 장편	일반문예지에 발표된 것	100
	소설, 희곡(드라마, 시나리오) 중편	중앙문예지에 발표된 것	150
	소설, 희곡(드라마, 시나리오) 중편	일반문예지에 발표된 것	100
	소설, 희곡(드라마, 시나리오) 단편	중앙문예지에 발표된 것	100
	소설, 희곡(드라마, 시나리오) 단편	일반문예지에 발표된 것	60
	시	중앙문예지에 발표된 것	30
시	일반문예지에 발표된 것	10	

- (1) 문예지의 창작작품은 길이와 기발표된 것, 중앙 및 일반, 분량 등을 고려
- (2) 연재된 경우에는 1편으로 인정
- (3) 창작품 번역의 경우 창작작품에 준하여 평가함
- (4) 연간 300점만 인정

나) 건축설계 분야 (건축학과에 한함)

구분	내 용		비 고	점수	
건축설계분야	전시	국제	저명 개인전, 개인 초대전		200
			기타 개인전		150
		국내	저명 개인전, 개인 초대전		150
			기타 개인전		120
	국제 및 국내 단체전			인정률	
	공모전	국제	현상설계전 당선 (최고상/대상)		180
			현상설계전 특선 이상		150
			현상설계전 입선		100
			현상설계전 출품	작품집으로 증빙가능하여야 함	50
		국내	현상설계전 당선 (최고상/대상)		150
			현상설계전 특선 이상		100
			현상설계전 입선		50
			현상설계전 출품	작품집으로 증빙가능하여야 함	30
	국내외 건축전문지에 작품 게재		전문지의 종류는 규정된 것에 한함	100	

간 서 명	김 욱	권인희	노기팔
-------	-----	-----	-----

- (1) 전시/국제의 경우, 국제건축가연맹(UIA), 미국건축가협회(AIA), 베니스 비엔날레, 밀라노 트리엔날레, 상파울로 비엔날레, 광주 국제 비엔날레, 서울 국제 비엔날레 등 국제 규모로 개최되는 전시
 - (2) 전시/국내의 경우,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가 주최하는 전시, 공인된 미술관 및 기관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언론사가 주최하는 전국규모의 전시, 정부관련 부처 및 국가가 인정하는 법인 및 협회 등이 주최하는 전국규모의 전시
 - (3) 공모전의 경우, 정부관련 부처 및 국가가 인정하는 법인 및 협회 등의 저명기관이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공모전 및 현상설계에서 수상한 실적
 - (4) 현상설계의 참여 여부는 객관적으로 실명확인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다) 미술분야 (미술학부에 한함) 다만, 전시기획, 평론은 미술학부 이론전공에 한함

구분	항목	분야별	내 용		점수
미술분야	전시	국외	초대 개인전	국제 저명기관, 미술관 및 화랑 초대전	200
			일반 개인전	국제 아트페어인 경우 개인전으로 인정	150
		국내	초대 개인전	저명기관, 미술관 및 화랑 초대전	150
			일반 개인전	화랑미술제 등 아트페어인 경우 개인전으로 인정	120
		국내 및 국외 단체전			
	공모전 (저명기관 주최)	국제	최고상/대상		180
			특선 이상		100
		국내	최고상/대상		70
			특선 이상		40
	전시기획	국제	저명	국제 저명 비엔날레 및 저명미술관 전시 총감독	200
			일반	국제 일반 비엔날레 및 비상업적인 전시	150
		국내	저명	국내 저명 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전국규모 전시 총감독	120
			일반	공인된 전시관 및 비상업적인 전시기획	100
	평론	국제	저명	국제 저명 미술전문지(영문 1500단어 이상)	100
일반			국제 일반 미술전문지(영문 500 ~ 1,500 단어)	60	
국내		저명	저명 미술전문지	60	
		일반	일반 미술전문지	40	

- (1) 국제 저명기관, 미술관 및 화랑 초대전: 베니스비엔날레, 상파울로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휘트니비엔날레, 윈스터조각기획전, 리옹비엔날레 등의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국제전에 한국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와 구겐하임미술관, 모데미미술관, 풍피두센터, 테이트갤러리 등의 초대전
- (2) 국제 아트페어: 내용적으로는 개인적이면서 단체전 형식을 빌어 개최하는 다음의 전시회는 개인전시회로 인정함 - FIAC, 스위스바젤 아트페어, 시카고 아트페어, LA 아트페어, 함브르크 아트페어, 스트라스부르크 아트페어, 취리히 아트페어, 유로(제네바) 아트페어, 샌프란시스코 아트페어, 마이애미바젤 아트페어, 쾰른 아트페어, 아르코 아트페어, 프랑크푸르트 아트페어
- (3) 국내 저명기관, 미술관 및 화랑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 권위 있는 사립미술관(성곡미술관, 호암미술관, 선재미술관, 워커힐미술관, 삼성미술관리움, 모

간서명	김옥	한인리	노기팔
-----	----	-----	-----

란미술관 등) 주최 전시와 예술의 전당기획 초대 전시회(예술의 전당 대관전시 제외), 권위 있는 화랑초대전

- (4) 화랑미술제 등 각종 아트페어: 화랑미술제, 마니프전, 카프전, 서울 아트페어, 청담미술제
- (5) 국내 저명기관 주최 공모전: 대한민국미술대전, 중앙미술대전 등과 같이 권위 있는 기관이 주최한 전국규모 공모전
- (6) 국내 전국규모의 공모전 입선은 국내일반 단체전에 준함
- (7) 국내외 심포지움 또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작을 발표한 경우에 전시분야 기준에 준하여 평가함
- (8) 국제전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의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해외전은 참가국 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제전과 동일하게 간주함
- (9) 도록이 제작되지 않은 전시일 경우 전시 관련자료(초대장, 엽서, 리플렛, 갤러리 사용계약서 등) 및 작품사진을 첨부할 것
- (10) 미술학부 개인전의 경우 최소 10점 이상의 신작(단, 설치미술의 경우에는 예외)이 발표되어야 하며 단체전은 반드시 신작이어야 함

라) 디자인분야 (디자인학부에 한함)

구분	항목	분야별	내 용		점수
디자인 분야	전시	국외	초대 개인전	국제 저명기관, 미술관 및 화랑 초대전	200
			일반 개인전	국제 아트페어인 경우 개인전으로 인정	150
		국내	초대 개인전	저명기관, 미술관 및 화랑 초대전	150
			일반 개인전		120
		국내 및 국외 일반 단체전			
	공모전 (저명기관 주최)	국제	최고상/대상		180
			특선 이상		150
			입선		50
		국내	최고상/대상	대통령상은 200% 인정	150
			특선 이상		100
입선				30	
국내외 초대출품			심사위원, 추천작가, 초대작가 자격의 출품	50	

- (1) 국내 저명 전시회: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권위 있는 사립미술관, 언론사 주최 전시와 정부 관련 부처 및 산하단체가 주최하는 전시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사단법인이 주최한 공모전
- (2) 광주 비엔날레, 광주세계디자인비엔날레, 청주 국제비엔날레, 서울 국제도예비엔날레 등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전도 국내 저명 전시회로 간주함
- (3) 국외 저명 초대전시회: 베니스 비엔날레, 밀라노 트리엔날레, 상파울로 비엔날레, 카셀도큐멘타, 휘트니 비엔날레, 화엔자 국제 도예전
- (4) 국내외 디자인전의 경우 단체전 형식이지만 내용적으로 개인전과 같은 규모는 개

간 서 명	김 옥	한인리	노 기팔
-------	-----	-----	------

인전시회로 인정

(5) 국내 공인 공모전: 산업디자인전, 공예대전, 서울신문사, 현대도예전, 서예대전, 섬유패션대전, KOSID대전, 인테리어대전, 사진대전, VIDAK 등과 같이 전국규모 또는 사단법인 기준으로 널리 알려진 공모전

(6) 개인전은 작품 10점 이상이어야 하며 갤러리 임대계약을 제출하여야 함. (개인 초대전의 경우 갤러리에서 보낸 초대장이나 레터 등을 첨부할 것.)

마) 음악분야 (음악학부에 한함)

구분	분야별	내 용		점수		
음악 분야	작곡 연주	국외	저명음악제에서의 작곡		200	
			저명음악제에서의 연주		150	
			개인연주회, 독창회		150	
		국내		저명음악제에서의 작곡, 연주		100
				개인연주회, 독창회		120
				창작곡(신작품에 한함)		50
			협연	독주, 독창, 오케스트라		100
				2중주, 2중창		50
				3중주 이상		30
			실내악	전곡연주	3인 이하	50
					4인~ 9인 (2곡 이상)	15
			반주	독주, 독창 (1시간 이상)		80
				1/2 이상		50
				1/2 이하		30
			오페라	주연 (국내 그랜드오페라 주연)		150
				조연 (국내 그랜드오페라 조연)		50
				오라트리오독창 (30분 이상)		80
			기타 국내외 공인된 장소에서의 작곡 및 연주			
	지휘	국외	공인 음악제 초청 지휘		200	
			공인 오케스트라지휘		180	
		국내	전곡 지휘		100	
1/2 이상			50			
1/2 이하			30			
작곡이나 작곡집	관현악	발표된 것에 한함		100		
	실내악	발표된 것에 한함		40		
	가곡	발표된 것에 한함		30		

(1) 국제저명음악제: Darmstadt 국제현대음악제(독일), Donauesingen 국제현대음악제(독일), Gaudeamus(네덜란드), Malboro음악제(미국), ASPEN음악제(미국), Musical Spring in St. Petersburg(러시아), K.Penderecki Festival(러시아), Tanglewood음악제(러시아), ISCM, ICMC

(2) 국내저명음악제: Pan Music Festival, 서울국제음악제, 난파음악제, 영남국제현대음악제, 대구국제현대음악제, 부산현대음악제, 합포만음악제, 대전현대음악제

간서명	김우	한민희	노기광
-----	----	-----	-----

- (3) 지휘는 서울의 경우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한전 아트홀, 호암 아트홀에서의 활동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의 홀은 50%만 인정함. 서울 이외의 지역은 좌석규모 500석 이상의 홀은 인정하고, 30%로 함
 - (4) 국내외 대도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도시의 공인된 장소에서의 작곡 및 연주 30% 인정
 - (5) 모든 발표나 연주 등은 1시간 이상 곡을 기준으로 함
 - (6) 실내악(연주)은 전곡연주의 경우에만 인정함
 - (7) 협연은 국공립 교향악단 및 국악단급 이상만 인정
 - (8) 기타 민간 교향악단은 50% 인정.
 - (9) 창작곡(신작품)은 국내외의 초연을 의미함
 - (10) 한국만 지휘, 한 연주회에서 한 프로그램만을 연주할 경우 20점 이하로 함
 - (11) 동일 작품을 2년 이내에 다시 공연하는 것은 인정치 아니함.
 - (12) 자선공연 등은 봉사점수로 인정
 - (13)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된 내용의 일련된 연주, 발표, 공연은 1회로 간주하며 나머지 부분은 봉사점수로 함
- 바) 무용분야 (무용예술학부에 한함)

구분	분야별		내용	점수
무용분야	국외	공연	초청공연 및 개인발표	200
			무용제 안무 및 주연	180
			기타안무, 출연	120
		제작	연출, 예술감독	200
			조연출, 예술감독	150
			대본, 기획, 무용극 음악	80
		콩쿨	1등	200
			2등	150
			3등	100
			기타입상	50
	국내	공연	개인발표	150
			초청공연(단 30분 이상)	100
			단체발표	인정률
			무용제의 안무 및 주연	120
			기타안무, 출연	50
		제작	연출, 예술감독	150
			조연출, 무대감독	70
			대본, 기획, 무용극 음악	30
		콩쿨	1등	150
			2등	100
3등	50			
기타입상	30			

- (1) 국외 저명무용제: 독일 국제페스티벌, 프랑스국제페스티벌, 사이다마 국제페스티벌, A.P.E 페스티벌, 홍콩페스티벌, 그리스페스티벌, 동경국제페스티벌

간서명	김옥	김인희	노기팔
-----	----	-----	-----

- (2) 공동안무는 인정률에 의함
- (3) 국내외 대도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도시의 공인된 장소에서 개인 발표, 단독안무 및 제작부분은 30% 인정
- (4) 동일 작품을 보완하여 장소를 옮겨 공연할 경우에는 30%만 인정(단 2년이 지나면 다시 인정)
- (5) 국립무용제: 국립, 시(도)립 무용단급이상 이에 준하는 공인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무용제, 전국 무용제, 서울 공연예술제

사) 연극영화분야 (연극영화학부에 한함)

구분	분야별		내 용		점수					
공연영상	국외	장편	감독, 제작, 기획, 연출, 극작, 희곡, 장편 시나리오		지정된 연극 영화제의 상영작	300				
					극장상영작(개봉관), TV 방영물(1회 30분 2부작 이상)					
					기타 연극 및 영화제 상영작					
				부분별 감독, 번역, 디자인	지정된 연극 영화제의 상영작	180				
					극장상영작(개봉관), TV 방영물(1회 30분 2부작 이상)	150				
					기타 연극, 영화제 및 개봉관 상영작	130				
			단편	감독	지정된 연극 영화제의 상영작	130				
	국내	장편 중편	장편	감독, 제작, 기획, 연출, 극작, 희곡, 시나리오		지정된 연극 영화제의 상영작	200			
						극장상영작(개봉관), TV 방영물(1회 30분 2부작 이상)	150			
						기타 연극 및 영화제 상영작	130			
					중편	지정된 연극 및 영화제 상영작, TV 방영물(30분 이상 1시간 미만)	130			
					장편 중편	60분 이상	150			
						30분 이상 60분 미만	120			
				단편	개인연구발표		단편영화감독(15분 이상 30분 미만)	120		
							단편영화감독(15분 미만)	80		
					제작, 스태프		TV방영물 감독(30분 이상 50분 미만)	80		
									TV방영물 감독(15분 이상 30분 미만)	60
									TV방영물 제작, 스태프(30분 이상 50분 미만)	60
									단편영화 시나리오 및 제작 스태프(30분 미만)	60
									TV방영물 스태프(30분 미만)	40
							교육홍보물	40		
				연극영화, TV방영물(1회 50분 10부작 이상)	200					
				연극영화, TV방영물(1회 30분 10부작 이상)	150					
				연극영화, TV방영물(1회 30분 10부작 미만)	120					

[2022년 추가 기준]

분야	내용	점수				
		국제			국내	
		A급	B급	기타	A급	B급
OTT콘텐츠	연출, 기획, 극본, 제작, 고정출연,	300	150	-	100	60
	음향, 촬영, 편집, 조명, 프로덕션디자인효과, CG 미술, 비고정출연, 포스트프로덕션.	180	90	-	60	13

- (1) 지정된 국외 연극 영화제: 아비뇽 국제연극제, ITI Theatre of Nations 연극제, 에든버러 연극제, 스트라트포드 연극제, 더블린 연극제, 런던 국제 연극제, 베세토 연극제, 아카데미영화제, 칸영화제, 베를린영화제, 베니스영화제, 모스크바영화제, 동경영화제, 홍콩영화제 등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주요영화제

간서명	김우	김인희	노기팔
-----	----	-----	-----

- (2) 지정된 국내 연극 영화제: 서울국제연극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광주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서울공연예술제, 춘사 나운규 영화예술제, 서울독립영화제, 대한민국대학영화제, 영상기술학회, 미탁영화제, 미장센 영화제, 부산국제아시아 단편영화제, 전국연극제, 김천가족극축제, 과천마당극제, 마산연극제, 거창연극제
- (3) 작품 및 작품참여는 작품이 완성되어 발표된 것이어야 함
- (4) 연극희곡 및 영화 장편시나리오의 경우 연극, 영화제작사와 계약을 한 희곡이나 시나리오 단행본인 경우에 한함
- (5) 중단편 영화의 경우 시나리오와 촬영된 영상물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6) 연극 영화의 동일 작품 제작 시 두 가지 영역을 겸할 경우 중복인정하지 아니하며 유리한 점수를 적용함. 단, 장편영화(연극)의 경우 시나리오(희곡)와 연출은 별도로 인정함
- (7) 모든 동일 작품의 재공연이나 순회공연은 인정하지 않음(단, 2년이 지나면 다시 인정)
- (8) 메인감독은 연극, 영화의 파트별 감독을 말함
- (9) 스텝 디자인은 조명, 음악, 의상, 분장, 미술(프로덕션 디자인), 안무, 액팅코치, 특수효과(시각), 음향, 녹음, 촬영, 편집, 슈퍼바이저를 말함.
- (10) 공동 제작 및 연출, 스텝의 경우에는 공동연구원 인정환산율을 적용
- (11) 연극과 영화의 연기는 조연급 이상의 배역을 원칙으로 하며 조연은 주연의 50%를 인정
- (12) 연구업적의 기산일은 상영 및 공연 일자를 기준으로 함
- (13) [2022년 추가 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 2-4-3. 예술대학 연극영화분야 (연극영화학부에 한함)를 따른다.

아) 체육분야 (스포츠과학부에 한함)

구분	분야별	내용	점수	
체육분야	발표	국외	공인된 체육단체에서의 개인발표	200
		국내	공인된 체육단체에서의 개인발표	120
		국내 및 국외 공인된 체육단체에서의 단체발표		인정률
	출전	국외	공인 심판 (1대회 기준)	200
			국제경기 감독, 코치	150
			국제경기 임원	100
		국내	공인심판 (1대회 기준)	100
			체육강사 (공인 연구회 50시간 이상)	150

자) 산학협력 연구영역

구분	내용	비고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예술 체육	비고
논문	국제학술지	SCI, SCIE, SSCI, A&HCI (2인이상일 경우 책임연구자는80%로 인정)	300	300	300	
		SCOPUS(60%만 인정)	180	180	180	
	국내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150	120	120	
저서 및 역서	국제전문저서	-	200	200	200	
	국내전문저서	대학교재포함	120	120	120	
	번역	-	100	100	100	
산학 협력 연구 활동	지식재산권	국제 특허등록	240점/건			출원인이 '대전대 학교산학협력단' 이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국제 특허출원	60점/건			
		국내 특허등록	100점/건			
		국내 특허출원	20점/건			

간서명	김우	관인리	노기팔
-----	----	-----	-----

		실용실안, 의장등록, 소프트웨어 등록	(20점/건)	연간 200점까지만 인정
	기술이전	기술이전	5.0점/100만원	
	신기술·제품 인증	정부, 공공기관 인증	(100점/건)	
	교원창업	기업 창업	(200점/건)	창업당해년도만 인정
	교외연구비 수혜	공학	3.0점/100만원	교외로부터 받은 연구비 수혜액
		자연·사회	5.0점/100만원	
		인문·예술	6.0점/100만원	
	기업 부설 연구소유치	정부, 공공기관 재정지원에 의한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50점/건)	기업체 소속 연구원 상주 및 부설연구소 유치관련 계약 필요
		기업 지원에 의한 대학 내 기업 부설연구소 유치	(20점/건)	

다. 교육업적 평가

구분	평가내용	평가점수
수업의 양	1. 강의시수	주당9시간 이하(강의시수X2점), 초과강의시수 X 4점
	2. 담당과목수	과목수 X 3점
	3. 대단위 강의	61명-100명(강좌수X3점) 101명 -150명(강좌수 X4점) 151명 이상 (강좌수 X5점)
	4. 교양과목수	과목수 X5점
교육특성화 프로그램	1. 공인인증 취득 과목	교내(10점/건), <삭제>
	2. 현장학습/외부연계수업	1점/명 (상한 10점)
	3. 원격수업 이러닝 콘텐츠개발 - 교내 원격수업 및 공개강좌 (공개강좌 DJ-MOOC, K-MOOC, KOCW 포함)	강좌수 X 10점 단, 원격혼합 수업(B/L)의 콘텐츠개발은 강좌당 5점
수업의 질	1. 세미나 참가 - 교수법 및 교육관련 내외부 세미나 (외부는 학교에서 출장 승인한 건에 한함)	회수당 3점(상한 10회)
	2. 원격수업 강의 - 교내 원격수업 및 공개강좌 (공개강좌 DJ-MOOC, K-MOOC, KOCW 포함)	교내(6점/강좌), 공개강좌(6점/강좌)
	3. 원어강의	9점/강좌 (어학과목 제외, 외국인이 본인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한국어 제외)로 강의할 경우에 해당)
	4. 에듀클래스 활용 여부(원격수업 제외)	강좌수 X 2점
	5. 성적평가의 다양성	삭제 <2009.5.26 개정>
	6. 교과목 CQI 미입력	강좌당 -2점
	7. 선진교수법 교과목 운영 (PBL, PJBL, F/L, 캡스톤디자인, IT융합신기술 활용 교수법, MOOC 활용연계 교수법)	강좌당 5점 (상한 3강좌)
	8. 교과목 인증제 참여 및 인증 (최초 1회만 인정)	참여 : 교과목당 5점 인증 : 교과목당 10점
	9. 교수 멘토링(멘토/멘티)	건당 3점
	10. 교수법 연구모임 참여 활동	도입당 3점
	11. 교수법 이러닝 콘텐츠 수강	강좌당 3점
학사행정	1. 강의계획서 기한내 입력	전강좌 작성시(5점)
	2. 기한내 성적 입력	전강좌 작성시(5점)
학생평가 (강의평가)	1. 강의계획서 상세정도 및 실행	평가결과 A(4점), B(3점), C(2점), D(1점)
	2. 강의 보충지도 및 열성도	평가결과 A(4점), B(3점), C(2점), D(1점)
	3. 휴강 및 결강정도	평가결과 A(4점), B(3점), C(2점), D(1점)
	4. 성적평가의 다양성	평가결과 A(4점), B(3점), C(2점), D(1점)
	5. 교수방법의 다양성(강의보조자료 사용 등)	평가결과 A(4점), B(3점), C(2점), D(1점)

간 서 명	김 수	김인리	노기팔
-------	-----	-----	-----

구분	평가내용		평가점수
학생지도	1. 학생상담	필수 입력 업적	평가결과(상답률) 95%이상(15점), 90%이상(10점), 85%이상(5점), 85%미만(0점)
	2. 수업배정 주4일 준수		준수(5점)
	3. 논문지도		석사(2점/명당, 상한 5명) 박사(4점/명당)
	4.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활동 (학생지도, 강의, 멘토 등 프로그램에서 직접 참여한 실적)		프로그램당 3점(상한 3프로그램)

1) 교육업적 평가기준

※ 교무행정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의 근거로 교원이 보직에 따라 강의시수를 감면 받을 경우, 교육업적 점수를 충족하지 못할 시 기본점수¹⁾를 인정하며, 기본점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점수를 부여한다.

1) 기본점수란 업적산정 기간 동안 취득해야할 총 점수를 업적산정기간의 학기로 나눈 점수임.

※ 강의가 없는 학기의 교육업적 평가는 직전 학기의 평가점수로 같음한다.

2) 산학협력 교육영역

구분	평가내용		평가점수	
수업의 양	1. 강의시수		주당9시간 이하(강의시수×2점), 초과강의시수 X 4점(상한 연간 108점)	
	2. 대단위 강의		61명-100명(강좌수×3점), 101명-150명(강좌수 X4점), 151명이상(강좌수×5점) (상한연간20점)	
수업의 질	1. 사이버강의(교외 공개강의)		교외(10점/강좌) (상한연간20점)	
	2. 원어강의		3점/시수(어학과목 제외, 외국인이 본인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한국어 제외)로 강의할 경우에 해당) (상한 연간 18점)	
학사행정	1. 강의계획서 기한내 입력		전 강좌작성 시(5점) (연간10점)	
	2. 기한내 성적 입력		전 강좌작성 시(5점) (연간10점)	
학생평가 (강의평가)	강의평가		8개 항목 선정 (연간 최고점수 60점)	
학생지도	1. DJ Been 실적에 의한 평가		0.5점/건 (상한연간 30점)	
	2. 논문지도		석사(2점/명당, 박사(4점/명당) (상한연간14점)	
산학협력 교육 활동	현장실습 지도	① 학기제	10점/건	연간 100점까지 인정
		② 계절제	5점/건	
	캡스톤디자인 지도	① 정규교과과정 과제	10점/건	연간 100점까지 인정
		② 비정규과정과제	5점/건	
	위탁교육프로그램 개발	① 산업체위탁과정(계약학과)	20점/건	연간 25점 인정
		② 재직자교육과정	5점/건	
	산학협력 학생 지도	① 취업 연계	(10점/건)	연간 100점까지 인정
		② 창업지도	10점/건	
③ 발명/창업동아리지도		-		
④ 산업체현장전학지도		10점(건)		

라. 봉사업적평가

1) 봉사업적 평가기준

간서명	김숙	김민리	노기팔
-----	----	-----	-----

구분	항 목	평가기준	점수
교내 봉사	보직	부총장	평가면제
		교무위원	15
		부속기관장, 부설기관장	9
		학과장, 학부장, 대학원 전공주임	6
		부설연구소장	5
		대학원 전공주임(학과장과 겸직)	3
		기타 봉사활동(위원회에서 판단)	3
	위원회	정규위원회 위원(당연직 제외)	5/건 (상한 10)
		특별위원회 위원(당연직 제외)	15/건
	학교 발전기여	발전기금·장학금 유치	1/10만원
		기자재·도서 무상유치	2/기자재 500만원, 2/도서 100권
		학내보고서(행정과제)	8/건
		교양공개강좌, 입시홍보, 면접, 출장(교생실습관련)	5/건
		학생교육 모델 개발	삭제 <2009.5.26 개정>
		학생취업활동	2점/명당
	행사참여	학교행사 준비위원	8/건
		학교행사 단순참여 (교화(연 8회 중 6회 이상 참석 시))	2/건
		학교행사에서의 발표	3/건
		대학시달 사항의 준수	삭제 <2009.5.26 개정>
		학생단체 지도활동 (동아리 지도)	삭제 <2009.5.26 개정>
교외 봉사	학술활동	공인된 국제학회 및 국제 경기단체 간사급 이상 임원	23(회장), 15(편집위원장), 8(임원), (SCI, SSCI, A&HCI)
		공인된 국내학회, 경기단체의 간사급 이상 임원	학진동제지 학회: 15(회장), 8(편집위원장), 5(임원), 학진동제후보지 학회: 8(회장), 6(편집위원장), 2(임원)
		교외 학술논문 심사위원	2/건(국내), 3/건(국제)
		교외 학위논문 심사	2/건(석사), 3/건(박사)
		외부초청강연	3/건(국내), 6/건(국제)
		공인된 영상매체 실적, 전문지 기고	8/건(국내), 15/건(국제)
		학술대회 진행, 토론	3/건
		학술세미나	2/건
	언론, 방송 활동	중앙방송, EBS 고정출연	15/프로그램
		중앙방송, EBS 비정기 출연	3/프로그램
		지방방송, 케이블, 기타 고정출연	8/프로그램
		지방방송, 케이블, 기타 비정기 출연	2/프로그램
		중앙일간지 고정투고(칼럼)	15/칼럼
		중앙지 비정기 투고	2/건
		인터넷, 지방지 고정투고(칼럼)	8/칼럼
인터넷, 지방지 비정기 투고		2/건	
정부기관 자문활동	국가중앙기관 자문위원, 고문, 연구위원	8/건	
	광역자치단체 자문위원, 고문, 연구위원	5/건	
	기초자치단체 자문위원, 고문, 연구위원, 심사위원	3/건, 2/건(일회성)	

간 서 명	김 욱	권인리	노기팔
-------	-----	-----	-----

구분	항 목	평가기준	점수
	비영리 공공단체활동	기부금 출연	-
		비영리 사회단체 임원	3/건, 2/건(일회성)
	산학협력활동	산업체 자문위원, 고문	
		산업체 기술지도	
	시험출제	국가고시 출제, 채점위원	5/건
공공기관 등 공인된 단체시험 출제, 채점, 심사위원		3/건	
기타	위원회에서 판단	3/건	
포상 징계	포상	국제기관 및 단체 표창	30/건
		국가중앙기관 표창	20/건
		공공기관 표창, 사회단체 표창	15/건
		학회 및 교내 표창	9/건
		교내 일반표창	6/건
	징계	정직	-15/건
		감봉	-8/건

※ 봉사업적은 1년 단위로 평가하며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산학협력 봉사영역

구분	항 목	평가기준	기준점수	상한점수
교내봉사	위원회	정규위원회 위원(당연직 제외)	5/건	10
		특별위원회 위원(당연직 제외)	10/건	10
	학교	발전기금·장학금 유치	1/10만원	20
	행사 참여	학교행사 참여 (전체교수회의, 교수연수)	2/건	6
교외봉사	학술 활동	공인된 국제학회 및 국제 경기단체 간사급 이상 임원	20(회장), 15(편집위원장), 8(임원), (SCI, SSCI, A&HCI)	20
		공인된 국내학회, 경기단체의 간사급 이상 임원	학진등재(후보)지 학회: 15(회장), 8(편집위원장), 5(임원)	15
		교외 학술논문 심사위원	2/건(국내), 3/건(국제)	10/15
		교외 학위논문 심사	2/건(석사), 3/건(박사)	4/6
		학술대회 좌장, 발표, 논평	3/건	15
	시험 출제	국가고시 출제, 채점위원	5/건	10
		공공기관 등 공인된 단체시험 출제, 채점, 심사위원	3/건	6
포상징계	포상	국제기관 및 국가중앙기관 표창	20/건	20
		공공기관 표창, 사회단체 표창	15/건	15
		학회 및 교내 표창	8/건	8
	징계	정직	-15/건	
감봉		-8/건		
산학협력 봉사활동	기술 경영 자문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지원 프로그램 관련 (지도횟수 5일 초과)	30점/건	연간 200점까지 인정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지원 프로그램 관련 (지도횟수 5일 이하)	20점/건	
		산업체 주관 기술자문	30점/건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가족회사 신규체결 및 관리 (회사 건당)	5점/건	
	산업체	정부 및 공공단체, 산업체 파견 활동	20점/건	

간 서 명	김 호	김인취	노기팔
-------	-----	-----	-----

구분	항 목	평가기준	기준점수	상한점수
	파견 활동	(1개월당)		
산업체 방문 특강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주관 지원 프로그램 관련		20점/건	연간 100점까지 인정
	산업체 주관 프로그램 관련		10점/건	
	세미나 사회 및 토론		10점/건	
산학협력 활성화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지원 부설 센터 유치		150점/건	연간 200점까지 인정
	산학협력 국가사업 보고서		50점/건	
	산학협력 기타사업 보고서		15점/건	
	산학협력 협약 체결		10점/건	연간 100점까지 인정
	산학협력협의회 개최		5점/건	연간 20점까지 인정
미니클러스터		10점/건	연간 20점까지 인정	

3. (경과조치) 업적평가 기준 변경에 따라 2021년 3월 1일 ~ 2025년 9월 1일의 기간 중 임용된 교원은 교원인사규정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시점까지 아래의 업적평가 기준을 따른다.

가. 세부기준 및 주석 명시사항

- 1) 업적기준일자는 학회지의 경우 발간일자, 저서의 경우 출판일자, 공연·전시·발표의 경우 해당 전시 및 발표일자,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일자로 함
- 2) 학술지의 학술논문은 그 형식과 체계가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형식을 지닌 것이어야 하며 해당 전공분야에 한함
- 3) 학술지의 등급은 해당 논문이 발간된 시기의 등재여부를 기준으로 함
- 4) 동일 내용의 논문을 상이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중복 인정되지 아니하며, 유리한 점수 1건만 인정
- 5) 국제학술지 특A급 : Cell, Science, Nature
- 6) 국제학술지 A급 : SSCI, A&HCI, SCI, SCIE에 등재된 학술지
- 7) 국제학술지 B급 :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단, Article-in-Press, Conference paper, Conference Review, Short survey(4종)은 불인정}
- 8) 기타국제학술지 : 국제A급, 국제B급을 제외한 국제에서 발간한 학술지로 ISSN번호가 수록된 경우에만 인정함
- 9) 국내학술지 A급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학술지
- 10) 국내학술지 B급 : 국내A급을 제외한 국내에서 발간한 학술지로 ISSN번호가 수록된 경우에만 인정함(단,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교내논문지는 ISSN번호가 없어도 인정함)
- 11) 국제전문저서 : 전공분야의 전문적인 내용 중심의 외국어로 국외에서 발간된 업적물로 ISBN번호가 수록된 신규 출판물에 한하여 인정함(개정판 불인정)

간 서 명	김 후	권인취	노기팔
-------	-----	-----	-----

- 12) 국내전문저서 : 전공분야의 전문적인 내용 중심의 국내에서 발간된 업적물로 ISBN번호가 수록된 신규 출판물에 한하여 인정함(개정판 불인정)
 - 13) 번역 초역 : 이미 출간된 국외서를 한국어로 또는 국내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출판된 업적물로 ISBN번호가 수록된 초역 출판물에 대하여 인정함(중역이후 출판물 불인정)
 - 14) 학술지의 논평, 서평 및 논문번역은 인정하지 아니함
 - 15) 역주, 주석은 관련분야에 한하며 발표된 학술지 성격에 따름
 - 16) 역주본, 주석본은 관련분야에 한하여 국내 전문저서로 인정
 - 17) 저서는 공인된 출판사에서 발간한 것으로서 소속 전공분야에 한함(문제집, 교양서, 사전편저, 원격교육 교안 등은 불인정)
 - 18) 지식재산권 : 등록된 것에 한하며 발명자와 출원자만 인정(단, 출원인으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 19) 동일한 특허를 다른 나라(국내 포함)에 출원한 경우 1개만 인정
 - 20) 출원된 특허가 등록된 경우, 인정받은 출원점수를 제외한 특허등록점수만 추가 인정
 - 21) 기술이전 : 본교 산학협력단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한함
 - 22) 연구비수혜 : 본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계약한 경우에 한하며, 본교에 입금된 연구비를 기준으로 함(단, 여기에서 연구비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표2>의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수익의 연구수익을 말한다.)
 - 23) 기술지원 수당 등의 실무용역성 연구비는 제외
 - 24) 연구비 수혜금액은 본교에 연구비가 입금된 일자를 기준으로 함
 - 25) 학술논문의 경우 첫 페이지 상단에 기재된 명단은 공동연구원으로 인정
 - 26) 중복 또는 표절된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평가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연구업적을 취소함
 - 27) 중복된 연구업적이라 함은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업적과 연구방법 및 내용이 일치하여 주요 결론이 유사한 연구업적을 말함
 - 28) 표절된 연구업적이라 함은 타인이 이미 발표한 업적과 연구방법 및 내용이 일치하여 주요 결론이 유사한 연구업적을 말함
 - 29) 예능계열의 연구업적 기산일은 공연, 발표, 전시 또는 수상한 일자를 기준으로 함
 - 30) 평가내용에 없는 업적은 인정하지 않음
 - 31) 교원인사규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외부연구비 국가과제에는 공공기관 과제를 포함함
 - 32) R&D과제 : 연구재단이나 정부기관에서 수주한 사업으로 연구결과물이 본교에 귀속되는 사업
 - 33) 사업수주 참여 인정범위 :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신청 단계부터 사업신청을 위한 활동(위원회 등)과 사업보고서(신청서 등) 작성에 직접 참여
- 나. 연구업적 평가
- 1) 일반

간서명	김욱	한민리	노기팔
-----	----	-----	-----

구분	평가내용	비고	인문/사회/예술	자연/공학	
논문	국제학술지 특A급	Cell, Science, Nature	1,000	1,000	
	국제학술지 A급	SSCI, A&HCI, SCI, SCIE	300	300	
	국제학술지 B급	SCOPUS	200	200	
	기타국제학술지	국제학술지 A급과 B급을 제외한 학술지 (ISSN번호가 부여된 학술지)	60	60	
	국내학술지 A급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150	150	
	국내학술지 B급	국내학술지 A급을 제외한 학술지 (ISSN번호가 부여된 학술지)	30	30	
저서	국제 전문저서		200	200	
	국내 전문저서	ISBN번호가 부여된 저서 (대학교재 포함, 편저 제외)	120	120	
	번역 초역	한국어를 외국어로/외국어를 한국어로	100	100	
산학협력	지식 재산권	국제특허 등록	G7 국가에 등록 및 출원된 특허에 한함	240	240
		국제특허 출원		60	60
		국내특허 등록	국내에 등록 및 출원된 특허 (G7 국가이외의 국제특허 포함)	120	120
		국내특허 출원		30	30
		기술이전	본교 수익금액 100만원 당	10	10
	외부 연구비 수혜	교외연구비	산학협력단과 계약한 연구비 100만원 당 (R&D과제 계약 시 2배 인정) (단, 상기 연구비외에 산학협력단 간접비(일반관리비 등 포함)가 발생하는 교육운영수익 및 기타산학협력(지원금)수익의 경우 연구비 업적점수의 30%를 반영한다.)	5	2.5
학교정책 기여	사업수주참여	10억 이상	45	45	
		5억 ~10억	30	30	
		5억 미만	1억 ~ 3억미만	15	15
			3억 ~ 5억미만	20	20
		기타 보고서(1억 미만) 1,000만원 당	1	1	
※ 사업수주 성공 시 2배 인정					

2) 창작활동 분야(한국어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문예창작학과에 한함)

분야	내용	점수
소설, 희곡(드라마, 시나리오) 장·중편	A급 문예지	100
소설, 희곡(드라마, 시나리오) 단편	A급 문예지	30
시, 평론, 수필(편당)	A급 문예지	10

<세부사항>

-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주기평가 업적 산정 시 창작활동 분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점은 100 점을 넘을 수 없음
- 희곡(드라마, 시나리오) 등 공연·영상물의 경우, 연극영화학부 업적평가 기준을 따름
- 연재된 경우에는 1편으로 인정
- A급 문예지 : 현대문학, 문학사상, 문학과 사회, 창작과 비평, 세계의 문학, 작가세계, 문학동네, 실천문학, 문예중앙, 시인수첩, 현대시, 현대시학, 시인세계, 시와 반시, 시와 사람, 시와 사상, 문학청춘, 한국문학, 시와 시학, 문예연구, 유심, 천년의 시작,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덩아돌하, 문학인, 문학선, 한국연극, 서정시학, 시와 문화

3) 건축설계 분야(건축학전공에 한함)

간서명	김욱	관인리	노기팔
-----	----	-----	-----

분야	내용	점수	
전시	A급기관의 초대 및 개인전	100	
	A급 기관 단체전	2인전	50
		3인전 이상	20
A급기관 주최 공모전/현장설계전	최고상/대상	100	
	특선 이상	70	

<세부사항>

- 국내 A급 기관 :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성곡미술관, 아트선재센터, 삼성미술움, 플라토, 일민미술관, 코리아나미술관, 모란미술관 가나아트센터, 국제갤러리, 갤러리현대, 소마미술관, OCI미술관
- 국내 A급 전시회 :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가 주최하는 전시회, 언론사 주최 전시회와 정부 관련 부처 및 산하단체가 주최하는 전시회, 광주 국제 비엔날레, 서울 국제 비엔날레
- 국제 A급 초대전시회 : 국제건축가연맹(UIA), 미국건축가협회(AIA), 베니스 비엔날레, 밀라노 트리엔날레, 상파울로 비엔날레
- 공모전/현장설계전의 경우, 정부관련 부처 및 국가가 인정하는 법인 및 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인 경우에 해당되며, 참여 여부는 객관적으로 실명확인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도록이 제작되지 않은 전시일 경우 전시 관련자료(초대장, 엽서, 리플렛, 갤러리 사용계약서 등) 및 작품사진을 첨부해야 함
-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주기평가 업적 산정 시 건축설계 분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점은 100점을 넘을 수 없음

4) 예술 분야

<공통사항>

- 국제 및 국내 저명기관은 해당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교육혁신처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혁신처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매 학년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각 학부별 평가내용에 없는 업적은 인정하지 않음

가) 미술/디자인 분야(미술만화게임학부, 디자인학부에 한함)

분야	내용	점수				
		국제			국내	
		A급	B급	기타	A급	B급
전시	개인전	300	150	60	100	30
	2인전	150	75	30	50	15
	단체전(3인 이상)	100	50	20	35	10
공모전 (저명기관 주최)	최고상/대상 (대통령상은 200% 인정)	300	-	-	100	-
	특선 이상	100	-	-	35	-
	추천작가, 초대작가 자격의 출품	-	-	-	10	5
공공 프로젝트	조각(100×100×100cm이상 A급/이하 B급)	150	75	-	50	15
	영상미디어 (설치면적 150×150cm 이상 A급/이하 B급)	150	75	-	50	15
	평면 면적기준 (200호 이상 A급/이하 B급)	150	75	-	50	15

간서명	김옥	함인리	노기환
-----	----	-----	-----

기획	전시	300	150	60	100	30
평론	미술관련 전문지	100	35	-	10	5

<세부사항>

- 모든 발표는 신작(미공개작품)에 한해 인정함
- 개인전은 전시작품 중 반드시 신작을 기준 작품수 이상 포함해야 함(신작 기준 작품수는 한국화, 회화, 사진, 평면미술작품의 경우 12점, 디자인분야의 경우 10점, 설치, 영상미디어 및 조각의 경우 8점 이상)
- 작품면적이 165㎡(50평)이상의 공간을 차지하는 초대형 작업은 신작 수가 기준치에 미달하더라도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전으로 인정 할 수 있음
- 2인전은 한국화, 회화, 사진, 평면미술작품의 경우 신작 6점, 디자인분야의 경우 신작 5점, 설치, 영상 및 조각의 경우 신작 4점 이상을 포함해야 함
- 기 전시되었던 전시작품 중 일부를 교체하여 시공간을 달리해서 표현하는 경우에는 신작의 비율 및 종전작품과의 차이점을 반드시 문서로 밝혀야 함(시청각적인 차이가 미미한 창작품을 신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외형적·예술적 차이점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만 업적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전시기관, 전문지 및 공모전명

[전시기관]

국제 A급	1. MOMA, 구겐하임, 테이트모던, LA MOCA, 퐁피두미술관 2. 베니스비엔날레, 휘트니비엔날레, 상파울로비엔날레, 이스탄불비엔날레, 카셀도큐멘타, 뮌스터조각기획전, 리옹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본 전시 또는 국가관에서 국가의 대표로 전시하는 경우)
국제 B급	1. 시드니비엔날레, 요하네스버그비엔날레, 요코하마트리엔날레,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상하이비엔날레, 밴쿠버비엔날레,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본 전시 또는 국가관에서 국가의 대표로 전시하는 경우) 2. G7(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국가 주요도시에 소재한 세계유수미술관(단, 건물면적기준 800㎡이상으로, 구체적 입증자료 제출시 인정함) 3. 중국의 국(시)립 미술관(단, 북경, 상해 소재 미술관으로 건물면적기준 800㎡이상으로, 구체적 입증자료 제출시 인정함) 4. 한국을 포함하여 5개국 이상이 참여한 국제규모의 전시회(단, 해당전시회 전시면적이 300㎡이상인 경우 인정함) 5. 5개국 이상이 참여한 국제규모의 아트페어
국제 기타	1. 국제A,B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전시회
국내 A급	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광역시립미술관, 도립미술관, 아트선재센터, 리움미술관, 일민미술관, 플라토갤러리, 금호미술관, 예술의 전당, COXE, BEXCO, 아라리오갤러리, 성남아트센터 2. (사)사립미술관협회 정회원 미술관 3. (사)한국화랑협회에 소속된 전문화랑 4. 경기도 및 광역시 이상의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상설전시장(지자체 시, 군, 구 소속의 전시장 제외)

간서명	김옥	관인리	노기팔
-----	----	-----	-----

	5. G7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원 등의 전시공간 6. 비 상업적 순수예술분야 기획전을 년 5회 이상 개최하고 전문직 학예사(큐레이터) 2명 이상이 상근하는 전문 전시장으로 해당 전시회 전시면적이 165㎡ 이상인 전시장(단, 전문직 학예사가 2인 이하인 경우 년 3회 이상의 해외 국제전 참가 실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A급으로 인정) 7. 중앙행정부처(중앙행정부처 산하기관 제외) 또는 경기도, 광역시(문화예술재단기금 포함)가 주최/주관하는 예술행사(지자체 시, 군, 구의 보조금이나 문화재단기금으로 추진되는 행사 제외)
국내 B급	국내A급 이외의 전문 전시장으로 다음 각항의 2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1. 년 5회 이상 비 상업적 순수예술분야 전시회 개최 2. 해당 전시회 전시면적 100㎡이상 3. 전시기획을 담당하는 전문직 1명 이상이 상근하는 전시장 4. 지자체 시, 군, 구(또는 관할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아트홀전시장/문예회관전시장 또는 주최/주관하는 예술행사 전시

- 국내B급에 해당하지 않거나 친목차원의 전시회, 동문전, 종교적 성향 모임의 회원전, 교육활동(학생교육용 전시참여 및 기획)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공모전 점수는 전시회 점수와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전시기획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N로 환산하여 인정함

[전문지]

- 국제A급 : 아트인 아메리카, 아트인터내셔널, 아트포럼, 스칼프처
- 국제B급 : 국제A급 이외의 해외전문지
- 국내A급 : 공간, 월간미술, 아트앤컬처, 미술세계, 아티클, 미술평단, 미술과 비평, 아트피플, 미술시대, 계간조각
- 국내B급 : 국내A급 이외의 국내전문지

- 공공프로젝트(건축물 미술작품)는 공인된 장소에 영구 설치된 신작품에 한함

[공모전]

국내외 저명 공모전	
국제 A급	Red dot design awards, IF design awards, IDEA design awards
국내 A급	중앙미술대전, 동아미술제, 대한민국공예대전,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나) 음악 분야

분야	내용	점수					
		국제			국내		
		A급	B급	기타	A급	B급	
공통	지휘	전곡 지휘	300	150	60	100	30
		1/2 이상	150	75	30	50	15
		1/2 미만	100	50	20	35	10
공통연주	공동연주	2인	150	75	30	50	15
		3인	100	50	20	35	10

간서명	김옥	김인희	노기팔
-----	----	-----	-----

분야	내용		점수					
			국제			국내		
			A급	B급	기타	A급	B급	
음반	4인 이상		60	30	12	20	6	
	음반	독집CD				70		
		2인(독주/독창자 기준)					35	
성악	독창회		300	150	60	100	30	
	오페라	주연(국내 그랜드오페라 주연)	200	100	40	70	20	
		주연(국내 그랜드오페라 조연)	120	60	24	40	12	
	오라토리오	독창(30분 이상)	60	30	12	20	6	
협연	(30분 이상)	60	30	12	20	6		
피아노	독주회		300	150	60	100	30	
	협연	전악장(솔로)	200	100	40	70	20	
		단악장(솔로)	120	60	24	40	12	
		2중주~3중주	전악장	160	80	32	55	16
			단악장	100	50	20	35	10
	반주	독주, 독창(전곡)	160	80	32	55	16	
1/2 이상		60	30	12	20	6		
관현악	독주회		300	150	60	100	30	
	협연	전악장(솔로)	200	100	40	70	20	
		단악장(솔로)	120	60	24	40	12	
		2중주~3중주	전악장	160	80	32	55	16
단악장			100	50	20	35	10	
작곡	개인작곡 발표회		300	150	60	100	30	
	창작품(신작)	오페라 2막 이상, 교향곡, 뮤지컬	300	150	60	100	30	
		오페라 1막, 관현악작품, 오라토리오, 칸타타, 10인 이상 실내악	150	75	30	50	15	
		실내악(독주곡 포함), 합창곡	120	60	24	40	12	
		가곡	60	30	12	20	6	
편곡	편곡	30	15	6	10	3		

<세부사항>

- 국제A급 : 에딘버러국제음악제, 다름슈타트국제음악제, 몬트리올국제음악제, 도나우에칭엔국제음악제, 가우데아무스음악제, 말보로음악제, 아스펜음악제, 대관령국제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ISCM, ICMC, ACL
- 국제B급 : G7(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을 비롯한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전문공연장(800석 이상)에서의 개인발표회(작곡, 독주, 독창 오페라, 협연, 지휘) 및 1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음악제에서의 발표
- 국제기타 : 국제A, B급을 제외한 국제일반음악제(페스티벌)나 해외 일반도시의 전문공연장(500석 이상)에서의 개인발표회(작곡, 독주, 독창 오페라, 협연, 지휘) 및 5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음악제에서의 발표

간서명	김우	한인희	노기팔
-----	----	-----	-----

• 국내A급

- 공연장 : 국립극장, 서울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금호아트홀, KBS홀, 세라믹팔레스홀, 고양아람누리, KT챔버홀, 영산아트홀
- 음악제 : Pan Music 페스티벌, 서울국제음악제, 영남국제현대음악제, 대전현대국제음악제, 합포만음악제, 부산현대음악제, 대구국제현대음악제, 대한민국 작곡제전
- 국내저명단체 및 오케스트라와의 공연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저명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성남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광주시립교향악단, 원주시립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교향악단, 제주시립교향악단, 서울바로크합주단, 부천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경북도립교향악단, 청주시립교향악단,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 국내B급 : 국내A급을 제외한 100석 이상 규모의 공연된 연주회장에서의 공연(단, 대학 및 초,중, 고등학교 강당 및 종교기관 연주홀 등은 인정하지 않음)
- 3년 이내에 재 연주되는 동일한 작품은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4년차 이후 재연주는 해당 배점의 80/100 을 인정함
- 개인발표나 개인연주는 1시간 이상의 연주시간을 기준으로 함(단, 1시간 미만인 경우 50% 인정)
- 공인된 장소에서의 연주는 연주자 10인 이하만 인정
- 음반은 시판용 바코드가 있는 것으로 이전에 연구실적으로 인정된 연주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연 1회만 인정)

다) 예술대학 연극영화 분야(연극영화학부에 한함)

분야	내용	점수				
		국제			국내	
		A급	B급	기타	A급	B급
연극·뮤지컬	연출, 제작, 예술감독, 기획, 희곡, 주연	300	150	-	100	30
	드라마트루기, 연기감독, 움직임감독, 기술감독, 번역, 조연	180	90	-	60	18
장편 영화	연출, 기획, 시나리오, 제작, 주연	300	150	-	100	30
	촬영, 편집, 조명, 프로덕션디자인, 사운드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조연 사운드, 포스트프로덕션, 비주얼 감독	180	90	-	60	18
TV 콘텐츠	연출, 기획, 극본, 제작, 고정출연,	300	150	-	100	30
	음향, 촬영, 편집, 조명, 프로덕션디자인효과, CG 미술, 비고정출연, 포스트프로덕션,	180	90	-	60	18
OTT콘텐츠	연출, 기획, 극본, 제작, 고정출연,	300	150	-	100	60
	음향, 촬영, 편집, 조명, 프로덕션디자인효과, CG 미술, 비고정출연, 포스트프로덕션,	180	90	-	60	18
기타영상물	연출, 기획, 극본, 제작, 주연	240	120	-	80	24
	촬영, 편집, 조명, 프로덕션디자인, 음향효과, CG 미술, 조연, 포스트프로덕션	140	70		47	14
기타장르 (오페라, 무용, 음악회 등) (매 학년도 1회만 인정)	연출, 제작, 예술감독, 기획, 주연	100	50		35	10
	안무, 조명, 음악, 음향감독	60	30		20	6

<세부사항>

- 국제 A급

간서명	김우	관인희	노기팔
-----	----	-----	-----

공연 (연극·뮤지컬)	국제 저명 연극(뮤지컬) 예술제에서 공연한 60분 이상의 작품 · 연극제: 아비뇽페스티벌, 에딘버러페스티벌, 베를린국제연극제, 카이로국제실험극제, 모스크바체홉극제연극제
영화 (장편 영화)	국제 저명 영화제에서 상영한 40분 이상의 작품 · 영화제: 칸, 베를린, 베니스, 토론토, 카를로비바리, 산세바스찬, 선댄스, 로테르담, 모스크바, 벤쿠버, 몬트리올, 카이로, 홍콩, 도쿄, 뉴욕국제영화제, 클레르몽페랑, 탐페레, 상하이, 암스테르담, 런던, 시드니, 멜버른, 도빌 샌프란시스코, 오키나와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작품
TV콘텐츠	G7국가의 방송국에서 1회 50분 10부작 이상 방영된 작품
OTT콘텐츠	OTT 플랫폼에서 1회 40분 4부작 이상 방영된 작품 · 플랫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TV
기타영상물	G7국가의 방송에서 1회 60분 이상 방영된 작품(단, 인터넷 방송은 제외)
기타장르	G7국가의 전문상영관(500석 이상) 또는 공연장(500석 이상)이나 연극전용소극장(120석 이상)에서 공연 또는 상영한 작품

• 국제 B급

공연 (연극·뮤지컬)	국내외의 전문제작사가 제작한 작품으로서 G7국가의 전문상영관(300석 이상)이나 연극전용극장(150석 이상)에서 60분 이상 공연한 작품
영화 (장편 영화)	국내외의 전문제작사가 제작한 작품으로서 G7국가의 전문상영관(300석 이상)에서 40분 이상 상영한 작품
TV콘텐츠	해외의 방송국에서 1회 50분 10부작 이상 방영된 작품
OTT콘텐츠	OTT 플랫폼에서 1회 40분 4부작 이상 방영된 작품: BBC홀루, HBO 맥스, 아이치이, 텐센트
기타영상물	해외의 방송에서 1회 60분 이상 방영된 작품(단, 인터넷 방송은 제외)
기타장르	국내외의 전문제작사가 제작하고, 국외의 전문상영관(300석 이상) 혹은 전문공연장(300석 이상)과 연극전용극장(100석 이상)에서 60분 이상(영화는 40분이상) 공연 또는 상영한 작품

• 국내 A급

공연 (연극·뮤지컬)	국내의 전문극단이 제작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전문공연장(300석 이상) 및 연극전용소극장(120석 이상), 연극협회에서 운영하는 연극전용극장에서 60분 이상 공연한 작품 또는 국내 A급 연극제에서 공연한 60분 이상의 작품 · 연극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연극제, 전국연극제,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거창국제연극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부산국제연극제, 화성국제연극제, 동아연극상, 밀양연극제, 대한민국연극대상
영화 (장편 영화)	국내의 전문제작사가 제작하고, 국내의 극장 개봉관(150석 이상)에서 상영한 작품 또는 국내 저명영화제에서 상영한 40분 이상의 작품 · 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제천국제영화제, 미장신 단편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서울국제청 소년영화제
TV콘텐츠	TV콘텐츠는 1회 50분 10부작 이상 방영된 작품
OTT콘텐츠	OTT 플랫폼에서 1회 40분 4부작 이상 방영된 작품 · 플랫폼: 티빙, 웨이브, 왓차
기타영상물	1회 60분 이상으로 각 해당 매체에서 상영한 작품
기타장르	국내의 전문공연단체가 제작하고 전문공연장(300석 이상)에서 60분 이상 공연한 작품

- 국내 B급 : 국내 A급을 제외한 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 문화체육부 등록 전문공연장(100석 이상)과 전문상영관(50석 이상)에서 공연 또는 상영한 작품(의정부예술의전당, 포천반월아트홀 포함)과 OTT 플랫폼에서 상영한 작품

간서명	김옥	김민희	노기팔
-----	----	-----	-----

- 단편영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에 따른 40분 미만 영상물) 작품은 장편영화 작품 기준 60% 인정(단, 20분 미만은 제외함)
- 국제 및 국내 저명 연극영화제에서 수상할 경우 각 항목에서 120%를 인정함
- 동일한 작품을 3년 이내에 공연·상영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공동 연구일 경우 1/N로 적용함

라) 무용 분야

분야	내용		점수				
			국제			국내	
			A급	B급	기타	A급	B급
공연	개인	60분 이상	300	150	-	100	30
		60분 미만	150	75	-	50	15
	단체	60분 이상	300	150	-	100	30
		30분 이상	150	75	-	50	15
안무/연출/예술감독	단체	60분 이상	160	80	-	55	16
		30분 이상	80	40	-	30	8
		30분 미만	40	20	-	15	4

<세부사항>

- 국제 A급 : G7국가의 전문공연장(800석 이상)에서의 공연, 안무, 연출, 예술감독 발표(해당 공연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동영상 제출)
- 국제 B급 : 국제 A급을 제외한 해외 주요도시의 메인 공연장(500석 이상)에서의 공연, 안무, 연출, 예술감독 발표(해당 공연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동영상 제출)
- 국내 A급 : 서울 및 6대광역시 소재 100석 이상 규모의 공인된 공연장과 의정부예술의전당, 포천반월아트홀 에서의 공연, 안무, 연출, 예술감독 발표(해당 공연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동영상 제출)
- 국내 B급 공연장 : 국내 A급을 제외한 전문공연장에서의 공연, 안무, 연출, 예술감독 발표(해당 공연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동영상 제출) (단, 대학 및 초,중,고등학교 강당 및 각종 축제 가설공연장 제외)
- 재안무 및 재공연의 경우 상기 기준 충족 시 50% 인정(연간 3회 이내)

다. 교육업적 평가

1) 평가 : 교육업적은 학기단위로 평가

2) 교육업적 평가기준

구분	평가내용	평가점수
수업운영	강의시수	① 주당9시간 이하 : 강의시수 X 3점 ② 초과강의시수 X 5점 ③ 상한계 적용 : 연간 144점
	대단위 강의	① 61명 이상 : 시수 X 2점(이러닝 제외)
	교양과목수	① 강의시수 X 2점(교양과 교수 제외)
	교수법 교육	① 교내 교수법 교육 1회당 3점(자필 서명한 교육에 한함) 교수법 의무참석자의 경우 점수 미부여 ② 교수법 의무참석자 불참시 : - 10점 ③ 교외 교수법 교육 1회당 5점(출장승인에 한함) ④ 교수법 연구모임 참여 활동 : 모임당 3점 ⑤ 교수법 이러닝 콘텐츠 수강 : 강좌당 3점 ⑥ 상한계 적용 : 연간 18점

간서명	김옥	한민리	노기팔
-----	----	-----	-----

구분	평가내용	평가점수
	원격수업 이러닝 콘텐츠 개발	① 교내 원격수업 및 공개강좌 (공개강좌 DJ-MOOC, K-MOOC, KOCW 포함) ② 강좌수 × 10점 단, 원격혼합 수업(B/L)의 콘텐츠개발은 강좌당 5점
	원격수업 강의	① 교내 원격수업 및 공개강좌(공개강좌 DJ-MOOC, K-MOOC, KOCW 포함) ② 교내(6점/강좌), 공개강좌(6점/강좌)
	교과목 CQI 보고서	① 보고서 미작성 강좌당 -2점
	선진교수법 교과목 운영	① PBL, PJBL, F/L, IT융합신기술 활용 교수법, 캡스톤디자인, MOOC 활용연계 교수법 ② 강좌당 5점(상한 3강좌)
	교과목 인증제 참여 및 인증	① 참여 : 교과목당 5점 ② 인증 : 교과목당 10점 ③ (최초 1회만 인정)
	교수 멘토링 (멘토/멘티)	① 건당 3점
	강의 평가	① 산식 : $(6 * Z) + 12$ Z점수(표준점수) = (강좌의 강의평가원점수-영역별 평균)/영역별 표준편차 단, 원 소속이 대학원(일반, 특수/전문대학원 포함)인 경우 해당학기 전체교원의 평균 점수를 부여함
학사행정	강의계획서 기한내 입력	① 전강좌 작성시 : 5점
	기한내 성적 입력	① 전강좌 작성시 : 5점
	수업배정 주4일 준수	① 주4일 준수시 : 5점
	무단휴강/미보강	① 건당 : -5점
학생지도	학생상담	① 110건 이상 상담 : 10점 ② 90건 이상 상담 : 8점 ③ 70건 이상 상담 : 6점 ④ 50건 이상 상담 : 4점 ⑤ 30건 이상 상담 : 2점 * T-Win시스템에 등록된 상담 건수에 한하여 인정 단, 원 소속이 대학원(일반, 특수/전문대학원 포함)인 경우 일반상담(증빙자료_상담일지) 건수도 포함하여 인정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활동	① 학생지도, 강의, 멘토 등 프로그램에서 직접 참여한 실적 ② 프로그램당 3점(상한 3프로그램)
산학협력	산업체요구 교과목	① 산학협동교과목 강의시수 × 2점 (산학협동교과목 명시 및 교육과정위원회 승인 받은 경우) ② 산업체요구 교과목 강의시수 × 2점
	현장실습 지도	① 학기제 : 4점/명 ② 상한제 적용 : 연간 20점
		① 계절제 : 2점/명 ① 4주 이상 전공관련 외부업체 현장실습 발굴 : 10점/건 (외부업체 관련 공문 제출 및 참여학생 확인 후 점수 부여)
	위탁교육 프로그램운영	① 산업체위탁 강의시수 × 2점 ② 상한제 적용 : 연간 12점
	산학협력 학생지도	① 창업지도 : 10점/건(결과물 : 사업자등록증 확인 후 승인) ② 창업/발명동아리 지도 : 3점/건 {본교(산학협력단)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에 한함}

2) 교육업적 평가기준

※ 교무행정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의 근거로 교원이 보직에 따라 강의시수를 감면 받을 경우, 교육업적 점수를 충족하지 못할 시 기본점수¹⁾를 인정하며, 기본점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점수를 부여한다.

간서명	김옥	권인희	노기환
-----	----	-----	-----

1) 기본점수란 업적산정 기간 동안 취득해야할 총 점수를 업적산정기간의 학기로 나눈 점수임.

※ 강의가 없는 학기의 교육업적 평가는 직전 학기의 평가점수로 같음한다.

라. 봉사업적 평가

1) 평가 : 봉사업적은 학년단위로 평가하며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봉사업적 평가기준

구분	항목	평가기준	점수
교내 봉사	보직	확대교무위원	2점
		학과장/학부장/대학원전공주임교수 (학부전공주임제외, 중복인정불가)	1점
	위원회	교내위원	1점/건(상한 : 연간 2점)
	학교발전 기여	기자재, 도서 무상유치	1점/기자재 500만원, 1점/도서 200원
		입학관련 업무지원 (입학홍보, 면접, 감독, 출제, 상담등)	2점/건당(상한 : 연간 4점)
		학생취업활동	2점/명(상한 : 연간 8점)
		본교 발전기금 유치	1/20만원
		학교행사 참여(전체교수회의, 전체 교수워크숍, 신입생OT, 교화(연8회 중 6회 이상 참석 시))	2점/건
		학생동아리지도활동	1점/건(상한 : 연간 2점)
	교외 봉사	학술활동	SCI급 학회지 회장/임원/편집위원 국제규모 경기단체 임원
등재(후보)지 학회임원/편집위원 전국규모 경기단체 임원			회장/편집위원장 : 2점 임원, 편집위원 : 1점
교외 학술논문심사			1점/건(상한 : 연간 8점)
교외 학위논문심사			1점/건(상한 : 연간 4점)
외부초청강연			1점/건(상한 : 연간 2점)
공인된 영상매체 실적, 전문지 기고			1점/건(상한 : 연간 2점)
학술대회 진행, 발표, 토론			1점/건(상한 : 연간 6점)
인론, 방송활동		방송 출연/투고/기고	1점/건(상한 : 연간 2점)
정부기관 자문활동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자문/고문/연구/심사위원	1점/건(상한 : 연간 2점)
비영리 공공단체 활동		기부금 출연	1/20만원(상한 : 연간 2점)
	사회봉사활동	1점/2시간 (상한 : 연간 8점)	
시험 출제	국가기관, 공공기관 시험출제/채점/심사	1점/건(상한: 연간 2점)	
포상, 징계	포상	국제기관/국가중앙기관 공공기관/사회단체/학회/교내	2점/건 1점/건
	징계	전책 정직/감봉	-5점/건(최저 0점까지 삭감) 당해연도 취득 봉사업적 불인정
산학 협력	산학협력 활동	산업체 자문위원, 고문, 기술지도, 가족회사유치	1점/건(상한 : 연간 2점) 1점/건(상한 : 연간 2점)
		정부 및 공공단체, 산업체 파견 활동(1개월당)	1점/건(상한 : 연간 2점)
		산업체 방문 특강	1점/건(상한 : 연간 2점)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지원 부설센터 유치	책임자 : 4점/건 참여자 : 1점/건
			산학협의체 활동(5개 기업 이상)

간서명	김욱	권인희	노기환
-----	----	-----	-----

<별표1> 연구업적 평가기준

1. 세부기준 및 주석 명시사항

- (1) 업적기준일자는 학회지의 경우 발간일자, 저서의 경우 출판일자, 공연·전시·발표의 경우 해당 전시 및 발표일자,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일자로 함.
- (2) 학술지의 학술논문은 그 형식과 체계가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형식을 지닌 것이어야 하며 교원의 전공분야에 한함
- (3) 학술지의 등급은 해당 논문이 발간된 시기의 등재여부를 기준으로 함
- (4) 동일 내용의 논문을 상이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중복 인정되지 아니하며, 유리한 점수 1건만 인정
- (5) 국제학술지 특A급 : Cell, Science, Nature
- (6) 국제학술지 A급 : SSCI, A&HCI, SCI, SCIE에 등재된 학술지
- (7) 국제학술지 B급 :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단, Article-in-Press, Conference paper, Conference Review, Short survey(4종)은 불인정}
- (8) 기타국제학술지 : 국제A급, 국제B급을 제외한 국제에서 발간한 학술지로 ISSN번호가 수록된 경우에만 인정함
- (9) 국내학술지 A급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학술지
- (10) 국내학술지 B급 : 국내A급을 제외한 국내에서 발간한 학술지로 ISSN번호가 수록된 경우에만 인정함(단,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교내논문지는 ISSN번호가 없어도 인정함)
- (11) 국제전문저서 : 교원의 전공분야의 전문적인 내용 중심의 외국어로 국외에서 발간된 업적물로 ISBN번호가 수록된 신규 출판물에 한하여 인정함(개정판 불인정)
- (12) 국내전문저서 : 교원의 전공분야의 전문적인 내용 중심의 국내에서 발간된 업적물로 ISBN번호가 수록된 신규 출판물에 한하여 인정함(개정판 불인정)
- (13) 번역 초역 : 이미 출간된 국외서를 한국어로 또는 국내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출판된 업적물로 ISBN번호가 수록된 초역 출판물에 대하여 인정함(중역이후 출판물 불인정)
- (14) 학술지의 논평, 서평 및 논문번역은 인정하지 아니함
- (15) 역주, 주석은 관련분야에 한하며 발표된 학술지 성격에 따름
- (16) 역주본, 주석본은 관련분야에 한하여 국내 전문저서로 인정
- (17) 저서는 공인된 출판사에서 발간한 것으로서 교원의 전공분야에 한함(문제집, 교양서, 사전편저, 원격교육 교안, 연구보고서, 강의자료집, 지침서, 매뉴얼, 도감은 제외)
- (18) 지식재산권 : 등록된 것에 한하며 발명자와 출원자만 인정(단, 출원인으로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 (19) 동일한 특허를 다른 나라(국내 포함)에 출원한 경우 1개만 인정
- (20) 출원된 특허가 등록된 경우, 인정받은 출원점수를 제외한 특허등록점수만 추가 인정

간서명	김옥	한인화	노기팔
-----	----	-----	-----

- (21) 기술이전 : 본교 산학협력단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한함
- (22) 연구비수혜 : 본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계약한 경우에 한하며, 본교에 입금된 연구비를 기준으로 함(단, 여기에서 연구비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표2>의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수익의 연구수익을 말한다.)
- (23) 기술지원 수당 등의 실무용역성 연구비는 제외
- (24) 연구비 수혜금액은 본교에 연구비가 입금된 일자를 기준으로 함
- (25) 학술논문의 경우 첫 페이지 상단에 기재된 명단은 공동연구원으로 인정
- (26) 중복 또는 표절된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평가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연구업적을 취소함
- (27) 중복된 연구업적이라 함은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업적과 연구방법 및 내용이 일치하여 주요 결론이 유사한 연구업적을 말함
- (28) 표절된 연구업적이라 함은 타인이 이미 발표한 업적과 연구방법 및 내용이 일치하여 주요 결론이 유사한 연구업적을 말함
- (29) 예능계열의 연구업적 기산일은 공연, 발표, 전시 또는 수상한 일자를 기준으로 함
- (30) 평가내용에 없는 업적은 인정하지 않음
- (31) 교원인사규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외부연구비는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R&D) 과제를 말함
- (32) R&D과제 :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R&D)을 수주하여 연구결과물이 본교에 귀속되는 사업
- (33) 사업수주 참여 인정범위 :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신청 단계부터 사업신청을 위한 활동(위원회 등)과 사업보고서(신청서 등) 작성에 직접 참여

2. 연구업적 평가기준

2-1. 일반

구분	평가내용	비고	인문 사회 예술	자연 공학
논문	국제학술지 특A급	Cell, Science, Nature	1,000	1,000
	국제학술지 A급	SSCI, A&HCI, SCI, SCIE	300	300
	국제학술지 B급	SCOPUS	200	200
	기타국제학술지	국제학술지 A급과 B급을 제외한 학술지 (ISSN번호가 부여된 학술지)	60	60
	국내학술지 A급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150	150
	국내학술지 B급	국내학술지 A급을 제외한 학술지 (ISSN번호가 부여된 학술지)	30	30
저서	국제 전문저서	ISBN번호를 부여받은 교원의 전공관련 출판물(개정판 불인정). 단, 연구보고서, 강의자료집, 지침서, 매뉴얼, 도감 제외	200	200
	국내 전문저서	출판물(개정판 불인정). 단, 연구보고서, 강의자료집, 지침서, 매뉴얼, 도감 제외	120	120

간서명	김우	한인화	노기환
-----	----	-----	-----

	번역 초역	한국어를 외국어로/외국어를 한국어로	100	100	
	창작집	ISBN번호를 부여받은 교원의 전공관련 출판물로 인문과 예능계열에 한하여 전공분야 저서로 인정 단, 시는 신작 10편 수록 시 인정(수필 불인정)	100	-	
산학협력	지식 재산권	국제특허 등록	G7 국가에 등록 및 출원된 특허에 한함	240	240
		국제특허 출원		60	60
		국내특허 등록	국내에 등록 및 출원된 특허 (G7 국가이외의 국제특허 포함)	120	120
		국내특허 출원		30	30
		기술이전		30	30
외부 연구비 수혜	교외연구비	산학협력단과 계약한 연구비 100만원 당 (R&D과제 계약 시 2배 인정) (단, 상기 연구비외에 산학협력단 간접비(일반관리비 등 포함)가 발생하는 교육운영수익 및 기타산학협력(지원금)수익의 경우 연구비 업적점수의 30%를 반영한다.)	5	2.5	
학교정책기여	사업수주참여	10억 이상		45	45
		5억 ~10억		30	30
		5억 미만	1억 ~ 3억미만	15	15
			3억 ~ 5억미만	20	20
		기타 보고서(1억 미만) 1,000만원 당		1	1
※ 사업수주 성공 시 2배 인정					

2-2. 예술분야

<공통사항>

- 국제 및 국내 저명기관은 해당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교육혁신처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혁신처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매 학년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각 학부별 평가내용에 없는 업적은 인정하지 않음

2-2-1. 디자인 분야(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에 한함)

구분	분야	내용	점수			
			A급	B급	기타	국내 A급
디자인 분야	전시	개인전	300	150	60	120
		2인전	150	75	30	60
		단체전(3인 이상)	120	50	20	35
	공모전 (저명기관 주최)	최고상/대상(대통령상은 200% 인정)	300	-	-	120
		특선 이상	100	-	-	40
		추천작가, 초대작가 자격의 출품	-	-	-	10
	공공 프로젝트	조각(100*100*100이상 A급/이하 B급)	150	75	-	50
		영상미디어(설치면적 150*150cm이상 A급/이하 B급)	150	75	-	50
		평면 면적기준(200호 이상 A급/이하 B급)	150	75	-	50
	기획	전시	300	150	60	120
평론	미술관련 전문지	100	35	-	10	

<세부사항>

간서명	김욱	한인희	노기팔
-----	----	-----	-----

- 모든 발표는 신작(미공개작품)에 한해 인정한다
- 국제 개인전은 횡수 제한 없으나 국내 개인전은 년 1회로 제한한다.
- 개인전은 전시작품 중 반드시 신작을 기준 작품수 이상 포함해야 한다.(신작 기준 작품수는 한국화, 회화, 사진, 평면미술작품의 경우 12점, 디자인분야의 경우 10점, 설치, 영상미디어 및 조각의 경우 8점 이상)
- 작품면적이 165㎡(50평)이상의 공간을 차지하는 초대형 작업은 신작 수가 기준치에 미달하더라도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전으로 인정 할 수 있다.
- 2인전은 한국화, 회화, 사진, 평면미술작품의 경우 신작 6점, 디자인분야의 경우 신작 5점, 설치, 영상 및 조각의 경우 신작 4점 이상을 포함해야한다.
- 기 전시되었던 전시작품 중 일부를 교체하여 시공간을 달리해서 표현하는 경우에는 신작의 비율 및 종전작품과의 차이점을 반드시 문서로 밝혀야 한다.(시청각적인 차이가 미미한 창작품을 신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외형적·예술적 차이점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만 업적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친목차원의 전시회, 동문전, 종교적 성향 모임의 회원전, 교육활동(학생교육용 전시참여 및 기획)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모전 점수는 전시회 점수와 이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전시기획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N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 전시기관, 전문지 및 공모전명

[전시기관]

국제A급	1. MOMA, 구겐하임, 테이트모던, LA MOCA, 퐁피두미술관 2. 베니스비엔날레, 휘트니비엔날레, 상파울로비엔날레, 이스탄불비엔날레, 카셀도큐멘타, 윈스터조각기회전, 리옹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본 전시 또는 국가관에서 국가의 대표로 전시하는 경우)
국제B급	1. 시드니비엔날레, 요하네스버그비엔날레, 요코하마트리엔날레,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상하이비엔날레, 밴쿠버비엔날레,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본 전시 또는 국가관에서 국가의 대표로 전시하는 경우) 2. G7(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국가 주요도시에 소재한 세계유수미술관(단, 건물면적기준 800㎡이상으로, 구체적 입증자료 제출시 인정함) 3. 중국의 국(시)립 미술관(단, 북경, 상해 소재 미술관으로 건물면적기준 800㎡이상으로, 구체적 입증자료 제출시 인정함) 4. 한국을 포함하여 5개국 이상이 참여한 국제규모의 전시회(단, 해당전시회 전시장이 300㎡이상인 경우 인정함) 5. 5개국 이상이 참여한 국제규모의 아트페어 6.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원
국제기타	1. 국제A,B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전시회
국내A급	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광역시립미술관, 도립미술관, 아트선재센터, 리움미술관, 일민미술관, 플라토갤러리, 금호미술관, 예술의 전당, COXE, BEXCO, 아라리오갤러리, 성남아트센터 2. (사)사립미술관협회 정회원 미술관 3. (사)한국화랑협회에 소속된 전문화랑 4. 경기도 및 광역시 이상의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상설전시장(행정구역상 군, 구 소속의 전시장 제외) 5. G7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원 등의 전시공간 6. 중앙행정부처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또는 경기도, 광역시(문화예술재단기금 포함)가 운영하는 시설의 상설전시장(행정구역상 군, 구의 보조기금이나 문화재단기금으로

간서명	김욱	한인취	노기팔
-----	----	-----	-----

	추진되는 행사 제외) 7. 비 상업적 순수예술분야 전시회를 년 5회 이상 개최하고, 전시기획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이 상근하고, 전시장 100㎡ 이상인 전시장
--	---

[전문지]

국제A급	아트인 아메리카, 아트인터내셔널, 아트포럼, 스칼프처
국제B급	국제A급 이외의 해외전문지
국내A급	공간, 월간미술, 아트앤컬처, 미술세계, 아티클, 미술평단, 미술과 비평, 아트피플, 미술시대, 계간조각

- 공공프로젝트(건축물 미술작품)는 공인된 장소에 영구 설치된 신작품에 한한다.

[공모전]

국제 A급	Red dot design awards, IF design awards, IDEA design awards
국내 A급	중앙미술대전, 동아미술제, 대한민국공예대전,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2-2-2. 음악 분야

음악	국제A급	에딘버러국제음악제, 다름슈타트하계국제음악제, 몬트리올국제음악제, 도나우에칭엔 국제음악제, 가우데아무스음악제, 말보로음악제, 아스펜음악제, 대관령국제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ISCM, ICMC, ACL	
	국제B급	G7(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을 비롯한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전문공연장(800석 이상)에서의 개인발표회(작곡, 독주, 독창 오페라, 협연, 지휘) 및 1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음악제에서의 발표	
	국내A급	공연장	국립극장, 서울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금호아트홀, KBS 홀, 세라믹팔레스홀, 고양아람누리, KT챔버홀, 영산아트홀, 국내 120석 이상 규모의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공연(단, 대학 및 초,중, 고등학교 강당 및 종교기관 연주홀 등은 인정하지 않음)
		음악제 국내저명단체 및 오케스트라와의 공연	국가 또는 지자체 주최 음악제 국립·도립·시립교향악단 및 오케스트라,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바로크합주단,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실용 음악	국제A급	발표/ 제작총괄	글로벌 음반사(Universal Music Group(UMG), Sony Music Entertainment, Warner Music Group (WMG)) 유통 정규앨범, 글로벌 차트(Billboard Charts, UK Official Charts, Spotify Global Top 50, Apple Music Global Charts, YouTube Music Charts (Global) Top 200, Shazam Global Top 200 진입 싱글 앨범, 글로벌 음반사 소속 제작
실용 음악	국제A급	공연/ 연주보컬 참여	MAMA 공연, 매디슨 스퀘어 가든(뉴욕), 크립토닷컴 아레나, 할리우드 볼(로스앤젤레스), 도쿄 돔(일본), 아시아월드 엑스포 아레나(홍콩), O2 아레나(영국 런던), 아코르 아레나(프랑스 파리)의 K-CON에서 공연
		창작	해외 아티스트 앨범 수록곡에 한하여 인정
		방송출연	해외 메이저 방송 및 라디오 출연
	국제B급	발표	해외 플랫폼 유통 정규앨범, 유튜브 및 사운드클라우드 유통 싱글앨범, 해외 아티스트 앨범 및 음원 공동작업
		공연/ 연주보컬 참여	Singapore Indoor Stadium (싱가포르), Impact Arena(태국 방콕), Taipei Arena(대만), Staples Center (Crypto.com Arena, 미국 로스앤젤레스), Ziggo Dome(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ercedes-Benz Arena(독일 베를린), Mall of Asia Arena(필리핀 마닐라)의 K-CON에서 공연

<세부사항>

간서명	김옥	한민희	노기철
-----	----	-----	-----

- 국제 독주회, 개인작곡발표회, 단독콘서트는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나 국내 독주회, 개인작곡발표회, 단독콘서트는 년 1회로 제한한다.
- 음악감독(감독급 직급) 또는 기획·프로듀싱·작사·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분야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한국음원저작권협회에 음원등록이 된 경우 음원저작권협회의 등록기준에 따라 다음의 3종 류는 인정한다.
 1. 음원권리자의 국제표준 ISRC코드
 2. KOMCA 저작권협회의 작곡 및 작사저작권등록 증명
 3.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실연권 증명
- 실용음악분야 단독 콘서트 진행 시 단독 명의의 공연 포스터를 증빙하여야 하며, 단체 콘서트 진행 시 출연 아티스트명 및 음악 감독명이 기재된 포스터 증빙 또는 공연 주최 측의 실적 증빙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음반 발매는 공인된 음원 사이트 등재 증빙 및 저작권협회 증빙(동일수록곡의 Instrumental track은 제외)
- 한 공연을 여러 명이 나누어 하더라도 독립된 팀이나 그룹(2인 이상 6인 이하)의 연주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독으로 인정한다.

2-2-3. 미술분야(미술만화게임학부에 한함)

구분	분야	내용	점수			
			A급	B급	기타	국내 A급
미술 분야	전시	개인전	300	150	60	120
		2인전	150	75	30	60
		단체전(3인 이상)	100	50	20	40
	(저명기관 주최)	최고상/대상(대통령상은 200% 인정)	300	-	-	120
		특선 이상	100	-	-	40
	공공 프로젝트	추천작가, 초대작가 자격의 출품	-	-	-	10
		조각(100*100*100이상 A급/이하 B급)	150	75	-	50
		영상미디어(설치면적 150*150cm이상 A급/이하 B급)	150	75	-	50
		평면 면적기준(200호 이상 A급/이하 B급)	150	75	-	50
	기획	전시	300	150	60	120
	평론	미술관련 전문지	100	35	-	10
	퍼블리싱	플랫폼 연계, 인디게임 런칭	300	-	-	120
PC, 콘솔, 모바일 게임 런칭 만화 단행본, 웹툰 연계						

<세부사항>

국제A급	1. MOMA, 구겐하임, 테이트모던, LA MOCA, 퐁피두미술관 2. 베니스비엔날레, 휘트니비엔날레, 상파울로비엔날레, 이스탄불비엔날레, 카셀도큐멘타, 윈스터조각기 확진, 리용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본 전시 또는 국가관에서 국가의 대표로 전시하는 경우)
국제B급	1. 시드니비엔날레, 요하네스버그비엔날레, 요코하마트리엔날레,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상하이비엔날레, 밴쿠버비엔날레,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본 전시 또는 국가관에서 국가의 대표 로 전시하는 경우) 2. G7(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국가 주요도시에 소재한 세계유수미술관(단, 건물면적기준 800㎡이상으로, 구체적 입증자료 제출시 인정함) 3. 중국의 국(사)립 미술관(단, 북경, 상해 소재 미술관으로 건물면적기준 800㎡이상으로, 구체적 입 증자료 제출시 인정함) 4. 한국을 포함하여 5개국 이상이 참여한 국제규모의 전시회(단, 해당전시장이 300㎡이상인 경우 인정함) 5. 5개국 이상이 참여한 국제규모의 아트페어

간서명	김옥	한인희	노기팔
-----	----	-----	-----

국제기타	1. 국제A,B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전시회
국내A급	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광역시립미술관, 도립미술관, 아트선재센터, 리움미술관, 일민미술관, 플라토갤러리, 금호미술관, 예술의 전당, COXE, BEXCO, 아라리오갤러리, 성남아트센터
	2. (사)사립미술관협회 정회원 미술관
	3. (사)한국화랑협회에 소속된 전문화랑
	4. 경기도 및 광역시 이상의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시설의 상설전시장
	5. G7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원 등의 전시공간
	6. 중앙행정부처(중앙행정부처 산하기관 제외) 또는 경기도, 광역시(문화예술재단기금 포함)가 주최/주관하는 예술행사(지자체 시, 군, 구의 보조금이나 문화재단기금으로 추진되는 행사 제외)
	7. 년 5회 이상 비 상업적 순수예술분야 전시회 개최하고, 전시기획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이 상근하고, 전시장이 100㎡이상인 전시장

- 국제 개인전 전시는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나 국내 개인전 전시는 년 1회로 제한한다.
- 모든 발표는 신작(미공개작품)에 한하여 인정한다.
- 개인전은 전시작품 중 반드시 신작을 기준 작품수 이상 포함해야 한다(신작 기준 작품수는 한국화, 회화, 사진, 게임/만화(퍼블리싱 업적과 중복인정 불가), 평면미술작품의 경우 12점, 디자인분야의 경우 10점, 설치, 영상미디어, 조각의 경우 8점 이상)
- 작품면적이 165㎡(50평) 이상의 공간을 차지하는 초대형 작업은 신작 수가 기준치에 미달하더라도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인전은 한국화, 회화, 사진, 게임/만화(퍼블리싱 업적과 중복인정 불가), 평면미술작품의 경우 신작 6점, 디자인분야의 경우 신작 5점, 설치, 영상 및 조각의 경우 신작 4점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 기 전시되었던 전시작품 중 일부를 교체하여 시공간을 달리해서 표현하는 경우에는 신작의 비율 및 종전작품과의 차이점을 반드시 문서로 밝혀야 한다(시청각적인 차이가 미미한 창작품을 신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외형적·예술적 차이점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만 업적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친목차원의 전시회, 동문전, 종교적 성향 모임의 회원전, 교육활동(학생교육용 전시참여 및 기획)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모전 점수는 전시회 점수와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전시기획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N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 전시확인서(전시장 규모, 전시기획 인력, 전시 작품 수 필수 명시) 및 리플렛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전시기관, 전문지 및 공모전명

[전문지]

국제A급	아트인 아메리카, 아트인터내셔널, 아트포럼, 스칼프처
국제B급	국제A급 이외의 해외전문지
국내A급	공간, 윌간미술, 아트엔컬처, 미술세계, 아티클, 미술평단, 미술과 비평, 아트피플, 미술시대, 계간 조각

- 공공프로젝트(건축물 미술작품)는 공인된 장소에 영구 설치된 신작품에 한함

간서명	김욱	관인회	노기철
-----	----	-----	-----

[공모전]

국제A급	Red dot design awards, IF design awards, IDEA design awards
국내A급	중앙미술대전, 동아미술제, 대한민국공예대전,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퍼블리싱]

국제A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team, Epic Games Store 등,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에 게임 출시 2. 네이버 웹툰, 카카오펀툰(글로벌), 픽코마(Piccoma), 코미코(Comico), 델리툰(Delitoun), 타파스(Tapas), 테피툰(Tappytoon) 등,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플랫폼에 영어 또는 다국어로 정식 연재된 웹툰 3. Marvel Comics, DC Comics, Image Comics와 같은 글로벌 출판사에서 정식 계약을 통해 발간된 단행본 4. Google Play, Apple App Store 등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출시된 게임
국내A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레진코믹스, 리디, 탑툰, 투믹스, 봄툰 2. Google Play, ONE store, Galaxy Store, Apple App Store 등 국내 주요 모바일 유통 플랫폼에 게임이 정식 심사 승인 후 등록 출시된 경우

- 모든 퍼블리싱 실적은 신작(미공개 창작물)에 한해 인정한다.
- 기존에 공개된 동일 콘텐츠의 재등록, 리마스터, 단순 포맷 변환은 신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화(웹툰포함)의 경우 글/그림 두 분야 모두 참여한 경우 단독 업적으로 인정하며, 글/그림 각각 한 분야에 참여할 경우 본교 연구업적 저서 기준의 인정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 웹툰 및 단행본의 출판을 여러 작가와 공동으로 출판할 경우 본교 연구업적 저서 기준의 인정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 게임 분야는 연구업적의 경우 기획/그래픽디자인/캐릭터디자인/프로그램 개발 분야에 따라 참여 인원을 본교 연구업적 논문 인정율을 적용하여 평가함(기획/개발/디자인 총괄의 경우 각 분야별 총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
- 국제 A급 또는 국내 A급 플랫폼에서의 퍼블리싱 활동이 다음 각 항목 중 3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공식 퍼블리싱 실적으로 인정한다.
 - ① 정식 유통 및 승인 여부(정식 유통 계약서 및 플랫폼 등록 확인서, 유료 또는 무료 출시 확인 자료(단, 단순 체험판 및 시연판은 제외), 국제A급의 경우, 타겟 국가의 현지 언어 적용 여부 증빙 자료
 - ② 운영 지속성(등록된 콘텐츠가 1개월 이상 실제 서비스 및 유통된 경우, 베타버전, 테스트 버전, 교육용 앱은 제외)
 - ③ 사용자 반응(누적 다운로드 수 100,000회 이상 또는 누적 접속자 수 100,000명 이상(접속기록 또는 통계 리포트 제출) 단, 국제A급의 경우 1,000만회 이상 조회 수 및 다운로드 수를 증명해야 함
 - ④ 콘텐츠 분량 및 연재 횟수(에피소드 30화 이상 연재된 웹툰, 시리즈 콘텐츠에 한해 인정)
 - ⑤ 다국어 지원 여부(콘텐츠가 타겟 국가의 언어로 번역 적용되었을 경우 번역본 또는 다국어 페이지 스크린샷, URL 등 제출)
 - ⑥ 단행본의 경우 ISBN이 부여되고 온라인에서 정식 판매가 확인된 경우 인정
- 다음 각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간서명	김욱	김민희	노기환
-----	----	-----	-----

- ① 단순 개인 블로그, SNS 업로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자발적 게시
 - ② 플랫폼의 정식 심사를 거치지 않은 데모 버전, 체험판, 클로즈드 테스트(CBT)용 버전
 - ③ AI 자동 배포 플랫폼 등을 통한 자동 등록 콘텐츠로, 검수 절차 없이 유통된 경우
 - ④ 저작권 소유가 불분명하거나,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게시된 콘텐츠
-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창작 퍼블리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유통된 콘텐츠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된다.
 - ①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문화재단 등 공공기관 주관 사업에 공식 선정
 - ② 선정 공문, 결과 통보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등 공식 증빙 자료 제출 필수
 - ③ 콘텐츠가 실제 유통 플랫폼을 통해 정식 출시 및 서비스 완료된 경우

2-2-4. 연기분야(연기예술학과에 한함)

구분	분야	내용			
		국제			국내
		A급	B급	기타	A급
연극·뮤지컬	연출, 제작, 예술감독, 기획, 희곡, 주연	300	150	-	120
	드라마트루기, 연기감독, 움직임감독, 기술감독, 번역, 조연	150	75	-	60
장편 영화/TV, OTT 콘텐츠/웹기반플랫폼	주연	300	150	-	120
	조연	150	75	-	60
기타장르(오페라, 무용, 음악회 등) (매 학년도 1회만 인정)	주연, 연출, 대본	300	150	-	120
	조연, 연기감독	150	75	-	60

<세부사항>

- 고정출연(주연) :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며, 포스터 또는 대본상 1순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해 100% 실적 인정/조연 : 대사량과 등장시간을 기준으로 50% 실적 인정
- 국제 A급

공연 (연극·뮤지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공연장(300석 이상)에서 공연한 작품 또는 국제 저명 연극(뮤지컬) 예술제에서 공연한 60분 이상의 작품 · 아비뇽페스티벌, 에딘버러페스티벌, 베를린국제연극제, 카이로국제실험극제, 모스크바체홉국제연극제, 상하이 국제 연극제, 홍콩 국제 연극제, 더블린 연극제 서울국제 공연 예술제, 런던 국제 연극제, 베세토 연극제, 바벨연극제, 바비칸 아트 센터
영화 (장편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저명 영화제에서 공연한 40분 이상의 작품 · 칸, 베를린, 베니스, 몬트리올, 카이로, 홍콩, 도쿄, 뉴욕국제영화제, 글레트몽페랑, 탐페레, 상하이, 암스테르담, 런던, 시드니, 뮌헨, 도빌, 샌프란시스코, 오키나와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로테르담 영화제 상영 작품
TV콘텐츠	G7국가의 방송국에서 1회 50분 10부작 이상 방영된 작품
OTT콘텐츠	OTT 플랫폼에서 1회 40분 4부작 이상 방영된 작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TV
기타장르	G7국가의 공연장(500석 이상)이나 연극전용소극장(120석 이상)에서 공연 또는 상영한 작품

- 국제 B급

간서명	김우	김인희	노기환
-----	----	-----	-----

공연 (연극·뮤지컬)	국내외의 전문제작사가 제작한 작품으로서 G7국가의 연극전용극장(150석 이상)에서 60분 이상 공연한 작품
영화 (장편 영화)	국내외의 전문제작사가 제작한 작품으로서 G7국가의 전문상영관(300석 이상)에서 40분 이상 상영한 작품
TV콘텐츠	해외의 방송국에서 1회 50분 10부작 이상 방영된 작품
OTT콘텐츠	OTT 플랫폼에서 1회 40분 4부작 이상 방영된 작품 · BBC홀루, HBO 맥스, 아이치이, 텐센트
기타장르	국내외의 전문제작사가 제작하고, 국외의 전문상영관(300석 이상) 혹은 전문공연장(300석 이상)과 연극전용극장(100석 이상)에서 60분 이상(영화는 40분이상) 공연 또는 상영한 작품

• 국내 A급

공연 (연극·뮤지컬)	국내의 전문극단이 제작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전문공연장(300석 이상) 및 연극전용소극장(120석 이상), 연극협회에서 운영하는 연극전용극장에서 60분 이상 공연한 작품 또는 국내 A급 연극제에서 공연한 60분 이상의 작품 국내의 전문극단이 제작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전문공연장(300석 이상) 및 연극전용소극장(120석 이상), 연극협회에서 운영하는 연극전용극장에서 60분 이상 공연한 작품 또는 국내 A급 연극제에서 공연한 60분 이상의 작품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연극제, 전국연극제, 대한민국연극제,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거창국제연극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부산국제연극제, 화성국제연극제, 예향 전남전국연극제, 동아연극상, 밀양연극제, 여당국제연극제, 포항국제바다연극제, 월드2인극페스티벌, 고마나루국제연극제, 무주페스티벌, 단단 페스티벌, 대한민국연극대상, 춘천국제연극제, 대산문학상, 의정부음악극연극제, 늘푸른연극제, 서울변방연극제
영화 (장편 영화)	국내의 전문제작사가 제작하고, 국내의 극장 개봉관(120석 이상)에서 상영한 작품 또는 국내 저명영화제에서 상영한 40분 이상의 작품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제천국제영화제, 미장센단편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인천디아스포라영화제
TV콘텐츠	TV콘텐츠는 1회 50분 10부작 이상 방영된 작품
OTT콘텐츠	OTT 플랫폼에서 1회 40분 4부작 이상 방영된 작품 · 티빙, 웨이브, 왓챠, 쿠팡플레이
웹기반플랫폼	구독자 50만명 이상의 공신력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작 및 공개된 웹드라마, 웹다큐멘터리 시리즈물의 총합 100분 이상 방영된 작품
기타영상물	1회 60분 이상으로 각 해당 매체에서 상영한 작품
기타장르	국내의 전문공연단체가 제작하고 전문공연장(300석 이상)에서 60분 이상 공연한 작품

- 단편영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에 따른 40분 미만 영상물) 작품은 장편 영화 작품 기준 60% 인정한다.(단, 20분 미만은 제외함)
- 국제 및 국내 저명 연극영화제에서 수상할 경우 각 항목에서 120%를 인정한다.
- 동일한 작품에 대한 중복 실적은 불인정하나 연기, 연출에 한하여 2년 이후에는 연 1회만 50% 인정한다
- 공동 연구일 경우 1/N로 적용한다.
- 모든 공연의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한다.(단체명 또는 대표자 이름이 명기된 초청장 또는 계약서, 초청단체의 공연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작품제목 또는 내용이 명기된 공연프로그램, 공연에 연출, 작

간서명	김숙	한인리	노기팔
-----	----	-----	-----

가로 참여할 경우 대본 제출 등)

2-2-5. <신설> 영상분야(영화영상학과에 한함)

구분	분야	내용		
		국제		국내
		A급	B급	A급
장편 영화	연출, 기획, 시나리오, 제작	300	150	120
	촬영, 편집, 조명, 프로덕션디자인, 사운드, 음향, C.G, 포스트프로덕션, 비주얼 등 부분별 감독	150	75	60
TV, OTT 콘텐츠/ 웹기반플랫폼	연출, 기획, 극본, 제작	300	150	120
	촬영, 편집, 조명, 프로덕션디자인, 사운드, 음향, C.G, 포스트프로덕션, 비주얼 등 부분별 감독	150	75	60
	연출, 기획, 극본, 제작	300	150	150
	촬영, 편집, 조명, 프로덕션디자인, 사운드, 음향, C.G, 포스트프로덕션, 비주얼 등 부분별 감독	150	75	60

<세부사항>

● 국제 A급

영화 (장편영화)	국외 영화 상영관(300석 이상)에서 상영한 작품 또는 국외 저명 영화제에서 상영한 60분 이상의 작품 · 칸, 베를린, 베니스, 토론토, 카를로비바리, 산세바스찬, 선댄스, 로테르담, 모스크바, 벤투버, 몬트리올, 카이로, 홍콩, 도쿄, 뉴욕국제영화제, 클레르몽페랑, 탐페레, 상하이, 암스테르담, 런던, 시드니, 멜버른, 도빌 샌프란시스코, 오키나와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상영 작품
TV콘텐츠	G7 국가의 방송국에서 1회 50분 10부작 이상 방영된 작품
OTT콘텐츠	OTT 플랫폼에서 1회 40분 4부작 이상 방영된 작품 ·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TV

● 국제 B급

영화 (장편영화)	국내외의 전문제작사가 제작한 작품으로서 G7 국가의 전문상영관(300석 이상)에서 40분 이상 상영한 작품
TV콘텐츠	해외의 방송국에서 1회 50분 10부작 이상 방영된 작품
OTT콘텐츠	OTT 플랫폼에서 1회 40분 4부작 이상 방영된 작품 · BBC홀루, HBO 맥스, 아이치이, 텐센트

● 국내 A급

영화 (장편 영화)	국내의 영화 상영관(120석 이상)에서 상영한 작품 또는 국내 저명 영화제에서 상영한 60분 이상의 작품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천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MITAK 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미장센단편영화제
TV콘텐츠	TV 콘텐츠는 1회 50분 10부작 이상 방영된 작품 ·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주요 케이블 채널에 정규 편성된 드라마 및 다큐멘터리(단, 지역 케이블 채널 제외)
OTT콘텐츠	OTT 플랫폼에서 1회 40분 4부작 이상 방영된 작품 · 티빙, 웨이브, 왓챠, 쿠팡플레이
웹기반플랫폼	구독자 50만명 이상의 공신력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작 및 공개된 웹드라마, 웹다큐멘터리 시리즈물의 총합 100분 이상 방영된 작품

간서명	김옥	한민희	노기환
-----	----	-----	-----

- 단편영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에 따른 40분 미만 영상물) 작품은 장편영화 작품 기준 60% 인정(단, 20분 미만은 제외함)
- 국제 및 국내 저명 영화제에서 수상할 경우 각 항목에서 120%를 인정함
- 동일한 작품을 2년 이내에 상영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같은 분야의 공동 연구일 경우 1/N로 적용함 (단, 동일 작품에서 각 분야별 참여는 단독으로 함)
- 연구업적 실적물은 팸플렛이나 대본(시나리오) 또는 엔딩 크레딧을 제출해야 인정

간 서 명	김 우	김인하	노기팔
-------	-----	-----	-----

<별표2> 교육업적 평가기준

1. 평가 : 교육업적은 학기단위로 평가

2. 교육업적 평가기준

구분	평가내용	평가점수
수업운영	강의시수	① 책임시수 이하 : 강의시수 X 3점 단, 외부연구비 수혜실적에 따른 책임시수 감면 : 감면시수 X 3점 ② 초과강의시수 X 5점 ③ 상한제 적용 : 연간 144점
	대단위 강의	① 61명 이상 : 시수 X 2점(이러닝 제외)
	교양과목수	① 강의시수 X 2점(상생교양대학 소속 교수 제외)
	교수법 교육	① 교내 교수법 교육 1회당 3점 (자필 서명한 교육에 한함) 교수법 의무참석자의 경우 점수 미부여 ② 교수법 의무참석자 불참시 : - 10점 ③ 교외 교수법 교육 1회당 5점(출장승인에 한함) ④ 교수법 연구모임 참여 활동 ; 모임당 3점 ⑤ 교수법 이러닝 콘텐츠 수강 : 강좌당 3점 ⑥ 상한제 적용 : 연간 18점
	원격수업 이러닝 콘텐츠개발	① 교내 원격수업 및 공개강좌(공개강좌 DJ-MOOC, K-MOOC, KOCW 포함) ② 강좌수 X 10점 단, 원격혼합 수업(B/L)의 콘텐츠개발은 강좌당 5점
	원격수업 강의	① 교내 원격수업 및 공개강좌(공개강좌 DJ-MOOC, K-MOOC, KOCW 포함) ② 교내(6점/강좌), 공개강좌(6점/강좌)
	교과목 CQI 보고서	① 보고서 미작성 강좌당 -2점
	선진교수법 교과목 운영	① PBL, PJBL, F/L, IT융합신기술 활용 교수법, 캡스톤디자인, MOOC 활용연계 교수법 ② 강좌당 5점(상한 3강좌)
	교과목 인증제 참여 및 인증	① 참여 : 교과목당 5점 ② 인증 : 교과목당 10점 ③ (최초 1회만 인정)
	교수 멘토링(멘토/멘티)	① 건당 3점
강의 평가	① 산식 : $(6 * Z) + 12$ Z점수(표준점수) = (강좌의 강의평가원점수-영역별 평균)/영역별 표준편차 단, 원 소속이 대학원(일반, 특수/전문대학원 포함)인 경우 해당학기 전체교원의 평균 점수를 부여함	
학사행정	강의계획서 기한내 입력	① 전강좌 작성시 : 5점
	기한내 성적 입력	① 전강좌 작성시 : 5점
	수업배정 주4일 준수	① 주4일 준수시 : 5점
	무단휴강/미보강	① 건당 : -5점
	논문지도	① 석사 : 2점/명당(상한 5명) ② 박사 : 4점/명당
학생지도	학생상담	① 110건 이상 상담 : 15점 ② 90건 이상 상담 : 12점 ③ 70건 이상 상담 : 9점

간서명	김옥	한민희	노기필
-----	----	-----	-----

		④ 50건 이상 상담 : 6점 ⑤ 30건 이상 상담 : 3점 * T-Win시스템에 등록된 상담 건수에 한하여 인정(취업 및 창업 방문상담의 경우 상담일지 제출 시 인정) * 단, 원 소속이 학부 이외로 T-Win시스템 등록이 불가할 경우 일반 상담(증빙자료 상담일지) 건수도 포함하여 인정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활동	① 학생지도, 강의, 멘토 등 프로그램에서 직접 참여한 실적 ② 프로그램당 3점(상한 3프로그램)
산학협력	산업체요구 교과목	① 산학협동교과목 강의시수 X 2점 (산학협동교과목 명시 및 교육과정위원회 승인 받은 경우) ② 산업체요구 교과목 강의시수 X 2점
	현장실습 지도	① 학기제 : 4점/명 ② 상한제 적용 : 연간 20점 ① 계절제 : 2점/명 ① 4주 이상 전공관련 외부업체 현장실습 발굴 : 10점/건 (외부업체 관련 공문 제출 및 참여학생 확인 후 점수 부여)
	위탁교육 프로그램운영	① 산업체위탁 강의시수 X 2점 ② 상한제 적용 : 연간 12점
	산학협력 학생지도	① 정부 및 지자체, 엔젤투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예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학생을 지도하여 2,000만원 이상 지원금 수혜(창업센터에서 승인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15점/건 ② 창업지도 : 5점/건 (지도학생 창업 후 년매출 1,000만원 이상(창업지도 상담일지 및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국세청) 서류제출 시 인정)) ③ 창업/발명동아리 지도 : 3점/팀 (학교/창업지원단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에 한함(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결과보고를 완료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교무행정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의 근거로 교원이 보직에 따라 강의시수를 감면받을 경우, 교육업적 점수를 충족하지 못할 시 기본점수¹⁾를 인정하며, 기본점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점수를 부여한다.

1) 기본점수란 업적산정 기간 동안 취득해야할 총 점수를 업적산정기간의 학기로 나눈 점수임.

※ 강의가 없는 학기의 교육업적 평가는 직전 학기의 평가점수로 같음한다.

간서명	김옥	한인희	노기팔
-----	----	-----	-----

<별표 3> 봉사업적 평가기준

1. 평가 : 봉사업적은 학년단위로 평가하며 연간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봉사업적 평가기준

구분	항목	평가기준	점수
교내봉사	보직	학대교무위원	2점
		학과장/학부장/대학원전공주임교수(학부전공주임제외, 중복인정불가)	1점
	위원회	교내위원	1점/건(상한 : 연간 4점)
	학교발전기여	기자재, 도서 무상유치	1점/기자재 500만원, 1점/도서 200권
		입학관련 업무지원(입학홍보, 면접, 감독, 출제, 상담등)	2점/건당(상한 : 연간 8점)
		학생취업활동	2점/명(상한 : 연간 16점)
		본교 발전기금 유치	1/20만원
		학교행사 참여(전체교수회의, 전체교수워크숍, 신입생OT, 교화(연8회 중 6회 이상 참석 시))	2점/건
		학생동아리지도활동	1점/건(상한 : 연간 4점)
	교외봉사	학술활동	SCI급 학회지 회장/임원/편집위원 국제규모 경기단체 임원
등재(후보)지 학회임원/편집위원 전국규모 경기단체 임원			회장/편집위원장 : 2점 임원, 편집위원 : 1점
교외 학술논문심사			1점/건(상한 : 연간 16점)
교외 학위논문심사			1점/건(상한 : 연간 8점)
외부초청강연			1점/건(상한 : 연간 4점)
공인된 영상매체 실적, 전문지 기고			1점/건(상한 : 연간 4점)
학술대회 진행, 발표, 토론			1점/건(상한 : 연간 12점)
언론, 방송활동		방송 출연/투고/기고	1점/건(상한 : 연간 4점)
정부기관자문활동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자문/고문/연구/심사위원	1점/건(상한 : 연간 4점)
비영리 공공단체활동		기부금 출연	1/20만원(상한 : 연간 4점)
		사회봉사활동	1점/2시간(상한 : 연간 16점)
시험 출제		국가기관, 공공기관 시험출제/채점/심사	1점/건(상한 : 연간 4점)
포상, 징계		포상	국제기관/국가중앙기관
	공공기관/사회단체/학회/교내		1점/건
	징계	견책	-15점/건 (최저 0점까지 삭감)
		정직/감봉	당해연도 취득 봉사업적 불인정
산학협력	산학협력활동	산업체 자문위원, 고문, 기술지도,	1점/건(상한 : 연간 4점)
		산업체 방문 특강	1점/건(상한 : 연간 4점)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지원 부설센터 유치	책임자 : 4점/건 참여자 : 1점/건
		산학협업체 활동(5개 기업 이상)	2점/건(상한 : 연간 8점)

간서명	김옥	한인리	노기환
-----	----	-----	-----

교무행정에 관한 규정(3-3-1)

교무행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담당시수 기준 및 외부출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년이 보장된 교원이 승급심사(구, 주기평가)에서 탈락된 이력이 없는 경우 책임시수를 아래 각호와 같이 책임시수를 감면한다. <개정 2025.10.27.>

1.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전 : 3시수 <개정 2025.10.27.>

2. 정년퇴직일로부터 6개월 전 : 6시수 <개정 2025.10.27.>

④ ~ ⑦ (현행과 동일)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7조(담당시수 기준 및 외부출강) 제3항의 적용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전체 전임교원에 적용한다.
3. (경과조치) 구, 주기평가에서 탈락된 이력이 없는 교원(교육트랙교원제외) 중 주기 평가 횟수가 2회 이내로 남은 경우 제17조(담당시수 기준 및 외부출강) 제3항의 적용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0 또는 1	정년퇴직일로부터 6개월 전 : 3시수
2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전 : 3시수

간서명	김옥	관인희	노기팔
-----	----	-----	-----

규정 제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단 운영규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하 “RISE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RISE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총장 직속기구로 사업 전담조직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단(이하 “RISE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RISE사업단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원, 연구교원, 초빙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③ RISE사업의 효율적인 단위 프로젝트별 수행을 위해 세부책임자(PM: Project Manager)를 둘 수 있으며 사업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④ RISE사업단 내에 운영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RISE사업팀을 둔다.

⑤ RISE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학-지역을 연계한 RISE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지역 동반성장·기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자체 연계협력 체제 및 특화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체계 구축
4. 지역전략산업 성장 및 협력체계 구축
5. 기타 RISE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조(운영위원회) ① RISE사업단 운영에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사업부단장, 기획처장, 교육혁신처장, 학생성공처장, 입학홍보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3인 내외의 본교 교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촉직 위원으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RISE사업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RISE사업 수행을 위한 대학의 행정·재정적 지원
3. RISE사업 교육과정 운영방안

간서명	김옥	한민화	노기환
-----	----	-----	-----

4. RISE사업 단위 프로젝트별 운영점검 및 업무조정
5. RISE사업 기자재 도입 필요성 및 타당성
6. RISE사업 사업비 예·결산 심의
7.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지산학협력위원회) ① RISE사업의 지역특화 클러스터 구축, 산업맞춤형 인재양성, 지산학협력 공동연구, 창업지원 등 지산학연 협력에 대한 자문 및 지원활동을 위해 지산학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지산학협력위원회는 사업단장, 사업부단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지산학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산학 협력 다각화 및 전략 수립 심의
2. 지역, 기업 의견 수렴 및 협력 강화
3. 산학협력 연구 및 기술개발 정책 심의
4. 기타 지산학 협력 관련 주요사항

제5조(자체평가위원회) ① RISE사업의 사업수행, 성과관리와 환류 강화 등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 사업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RISE사업 성과관리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2. RISE사업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3. RISE사업 진행 경과 및 사업비 집행 점검
4. 기타 성과관리 및 평가 주요사항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

간서명	김우	한인희	노기철
-----	----	-----	-----

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판단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 중 안건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재정) RISE사업단의 재정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1. 경기도 RISE사업의 지원금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지원금(대응자금)
4. 산학협력기업 및 사업참여기업의 지원금
5. 그 밖의 기부금 및 지원금

제8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총괄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RISE센터의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비관리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사업비 집행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예산운영지침」을 따르고,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RISE사업 운영 가이드」에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본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④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는 총괄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0조(지원) 본교 및 산학협력단은 RISE사업단이 경기도 RISE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11조(재산의 귀속) RISE사업단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RISE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RISE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른다. 다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간서명	김옥	한인희	노기팔
-----	----	-----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RISE사업단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간서명	김옥	반인취	노기팔
-----	----	-----	-----

학교기업 설치·운영 규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대진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및 산학협력단에서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밖에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기업의 종류) 학교기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산하에 설치되는 학교기업
2. 본교 산학협력단에 설치되는 학교기업

제3조(설치) ①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 신청서를 학교기업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명칭
2. 학교기업의 설치 목적
3. 연계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
4. 사업분야 및 종목
5. 학교기업의 소재지와 장소
6. 학교기업 설치(개업)일
7. 학교기업의 조직편제
8. 재정투자계획 및 시설확보 계획
9. 학교기업 조직 및 인력충원 계획
10. 인허가 획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1.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12. 학생현장실습 활용 계획
13. 학교기업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 이라 한다)

② 학교기업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선택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기업 설치에 학교기업 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④ 학교기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교기업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종목과 관련 있는 관청의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수행한다.

⑤ 학교기업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 산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소재지)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교육부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내시설 내 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대진대학교 교지로 한다. 다만, 학교기업 특성상 부득이하거나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본교가 소재하는 도내에

간서명	김옥	허인희	노기팔
-----	----	-----	-----

한하여 외부에 둘 수 있다.

제5조(사업종목)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사업종목으로 하되, 대진대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진 종목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6조(조직) ① 학교기업의 대표는 제2조에 따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학교기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교기업의 대표는 각각의 학교기업에 장을 둘 수 있으며, 학교기업의 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학교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교 교직원 및 산학협력단의 연구원(직원)에게 학교기업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각 직제는 겸직할 수 있다. 단, 교수의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기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 교육혁신처장, 학생성공처장, 총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기업 운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기업 제반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교기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학교기업의 종목별 순이익 처분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5. 학교기업 관련학과 및 학부의 현장실습교육에 관한 사항
6. 학교기업 운영평가를 통한 존속 여부에 관한 사항
7.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현장실습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3장 현장실습

간서명	김우	한인희	노기팔
-----	----	-----	-----

- 제8조(현장실습)** ① 총장은 학교기업을 학생의 현장실습교육과 및 교원의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른다.
- ③ 학교기업 관련 학과 소속 대학의 장이 전공 교과목의 현장실습 위탁교육을 요청한 경우도 8조 2항에 의한 현장실습으로 간주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9조(회계처리) ① 학교기업의 회계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학교기업의 회계는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제10조(예산과 결산) ① 학교기업의 대표는 각 소속 회계연도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본교 산하에 설치되는 학교기업은 총장에게, 본교 산학협력단에 설치되는 학교기업은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보고해야 한다.

② 총장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라 관련된 예산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 지출범위) ① 학교기업의 대표는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② 교비 회계로 운영할 경우 대학 회계의 연간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연간 수입 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교기업의 사용종목과 학교기업의 수
2. 학교기업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3. 학교기업 관련 직원과 학생의 수

제12조(학교시설의 사용) ① 학교기업이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 시설·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및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회계감사) 감사는 본교 산하에 설치되는 학교기업은 대학의 회계감사 시, 본교 산학협력단에 설치되는 학교기업은 산학협력단의 회계감사 시 포함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상

제14조(보상금의 지급) ① 학교기업의 대표는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순이익의 30% 범위내에서 순이익 발생 시점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간서명	김옥	권인희	노기팔
-----	----	-----	-----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장학금 용도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 및 학교기업 직원에 대한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학생의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⑤ 보상금은 학교기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15조(지원금) 학교기업의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학교기업의 폐지

제16조(학교기업 폐지) ① 학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교기업을 폐지할 수 있다.

1. 학교기업이 제출한 설치·운영 신청서의 사업종목과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2. 3년 이상의 손실이 계속 발생하여 학교기업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학교기업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시켰을 경우

4. 천재지변과 재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학교기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② 학교기업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기업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소명기일은 통보일로부터 2주일로 한다.

③ 폐지되는 학교기업의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④ 폐지되는 학교기업 구성원과 계약한 근로계약은 폐지와 동시에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며,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7장 기타

제17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학교기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기업별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김옥	한인희	노기팔
-----	----	-----	-----

대진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설

- 대학원명 : 의과학전문대학원
- 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설치학과	입학정원(수업연한 2년)			총 정원(명)*
	석사과정(명)	박사과정(명)	계(명)	
의과학과	12	-	12	24

※ 총 정원(24명) = 학위과정 입학정원(12명) × 수업연한(2년)

※ 교육부 전문대학원 신설 승인에 따른 조건부 승인으로 미승인 시 신설하지 않음.

- 이 상 -

간서명	김 숙	한인희	노기팔
-----	-----	-----	-----

대진대학교 2026.03.01.일자 전임교원 최초 재임용

성명	생년 월일	소속	임용기간
김		보건경영학과	2026.03.01. ~ 2032.02.29
공		한국학과	

- 이상 2명 -

간서명	김옥	김인리	노기팔
-----	----	-----	-----

대진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 충원 계획

연번	트랙	단과대학명/학과명	초빙분야	필수자격조건	인원
1	정년	인문예술대학 문예콘텐츠창작학과	문예 및 미디어이론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SCI급 주저자 1편 또는 KCI(등재지)급 주저자 3편 이상[등재후보지 제외]	1
2	정년 (실기)	인문예술대학 미술만화게임학부	만화	1.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교육·연구(학위포함) 경력연수의 합이 4년 이상인 자 3.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전시 1회 또는 퍼블리싱 1편 이상[기타(창작) 업적 인정(안) 참조, 포트폴리오 필수 제출]	1
3	정년 (실기)	인문예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패키지 디자인	1. 패키지디자인 전공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교육·연구(학위포함) 경력연수의 합이 4년 이상인 자 3.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전시(개인전 국내 A급) 1회 이상 [기타(창작) 업적 인정(안) 참조, 포트폴리오 필수 제출]	1
4	정년	인문예술대학 연기예술학과	연극이론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KCI(등재지)급 주저자 2편 이상	1
5	정년	글로벌산업통상대학 글로벌경제학과	거시일반 (국제경제 및 금융경제)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SCI급 주저자 1편 또는 KCI(등재지)급 주저자 3편 이상[등재후보지 제외]	1
6	정년	글로벌산업통상대학 경영학과	생산운영 /데이터관 리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SCI급 주저자 1편 이상 [단, MDPI 및 Frontiers 출간 논문 불인정]	1
7	정년	글로벌산업통상대학 경영학과	재무/금융	1.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SCI급 주저자 1편 또는 KCI(등재지)급 주저자 3편 이상[등재후보지 제외]	1
8	정년	글로벌산업통상대학 경영학과	마케팅	1.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SCI급 주저자 1편 또는 KCI(등재지)급 주저자 3편 이상[등재후보지 제외]	1
9	정년	공공인재대학 행정정보학과	행정계량 분석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SCI급 주저자 1편 또는 KCI(등재지)급 주저자 3편 이상[등재후보지 제외]	1
10	정년	공공인재대학 행정정보학과	재무행정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SCI급 주저자 1편 또는 KCI(등재지)급 주저자 3편 이상[등재후보지 제외]	1
11	정년	공공인재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실 천(정신건 강분야 제외)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SCI급 주저자 1편 또는 KCI(등재지)급 주저자 3편 이상[등재후보지 제외] 3.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1

간서명	김 옥	하은인	노 기팔
-----	-----	-----	------

연번	트랙	단과대학명/학과명	초빙분야	필수자격조건	인원
12	정년	공공인재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다문화)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SCI급 주저자 1편 또는 KCI(등재지)급 주저자 3편 이상[등재후보지 제외]	1
13	정년	공공인재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SCI급 주저자 1편 또는 KCI(등재지)급 주저자 3편 이상[등재후보지 제외]	1
14	정년	보건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영양학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SCI급 2편 이상 [단, 주저자 1편 이상] 3. 영양사 면허 소지자	1
15	정년	보건과학대학 보건경영학과	보건관리	1. 보건학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SCI급 주저자 2편 이상	1
16	정년	AI융합대학 AI융합학부 (스마트모빌리티전공)	모빌리티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SCIE급 주저자 2편 이상	1
17	정년	AI융합대학 AI융합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공학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SCI급 2편 이상 [단, 주저자 1편 이상]	1
18	정년	AI융합대학 AI융합학부 (AI빅데이터전공)	컴퓨터공학 또는 AI관련 분야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SCI급 2편 이상 [단, 주저자 1편 이상]	1
19	정년	AI융합대학 스마트융합보안학과	컴퓨터학 또는 보안학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SCI급 2편 이상 [단, 주저자 1편 이상]	1
20	정년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전기공학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SCI급 2편 이상 [단, 주저자 1편 이상]	1
21	정년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전기공학 (전력계통)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SCI급 2편 이상 [단, 주저자 1편 이상]	1
22	정년	국제협력대학 한국학과	한국어교육	1. 한국어교육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SCI급 주저자 1편 또는 KCI(등재지)급 주저자 3편 이상[등재후보지 제외] 3. 한국어교원자격증 1급 소지자	1
23	정년	국제협력대학 국제경영학과	경영학	1. 경영학/국제경영학/국제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필수업적 : 최근 3년간 SCI급 주저자 1편 또는 KCI(등재지)급 주저자 3편 이상[등재후보지 제외] 3. 영어강의 가능자 - 해당분야 대학(전문대 포함) 영어강의 4개학기 이상 경력자	1

간서명	김옥	관인리	노기팔
-----	----	-----	-----

연번	트랙	단과대학명/학과명	초빙분야	필수자격조건	인원
24	비정년 (강의)	인문예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	1. 시각(광고)디자인 전공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교육·연구(학위포함) 경력연수의 합이 4년 이상인 자 3. 최근 3년간 연구업적 100% 이상인 자	1
25	비정년 (강의)	AI융합대학 스마트융합보안학과	컴퓨터학 또는 보안학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100% 이상인 자	1
26	비정년 (강의)	국제협력대학 한국학과	한국어교육	1. 한국어교육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100% 이상인 자 3.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1
27	비정년 (강의)	국제협력대학 국제경영학과	경영학	1. 경영학/국제경영학/국제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100% 이상인 자 3. 영어강의 가능자 - 해당분야 대학(전문대 포함) 영어강의 2개학기 이상 경력자	1
28	비정년 (강의)	상생교양대학 교양학부	AI·SW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100% 이상인 자	1
29	비정년 (산학)	산학협력단 DNA플러스융합기 술전문대학원 (파견 예정)	토목공학 [부교수]	1. 토목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200% 이상인 자 3. 해당분야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	1
30	비정년 (산학)	산학협력단 스마트모빌리티전공 (파견 예정)	모빌리티 (전자,기계, 로봇,컴퓨터 공학)분야 [조교수]	1.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100% 이상인 자 3. 해당분야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	1
31	비정년 (산학)	산학협력단 AI빅데이터전공 (파견 예정)	컴퓨터공학 또는 AI관련 분야 [조교수]	1.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100% 이상인 자 3. 해당분야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	1
32	비정년 (산학)	산학협력단 RISE사업단 (파견 예정)	군사학 [조교수]	1.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100% 이상인 자 3. 해당분야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	1
33	비정년 (산학)	산학협력단 RISE사업단 (파견 예정)	항공우주학 [부교수]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200% 이상인 자 3. 해당분야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	1
34	비정년 (산학)	산학협력단 창업센터 (파견 예정)	경영학(창 업/벤처기 업,기업가), 창업학 [부교수]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연구업적 200% 이상인 자 3. 해당분야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	1
총 인원 수				34명	

- 이상 -

간서명	김옥	김민희	노기팔
-----	----	-----	-----

대진대학교 행복기숙사 직영 전환 및 기채 허가에 관한 건

대진대학교 행복기숙사 직영 전환 사업에 대하여 승인하며, 그에 따른 기채 허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승인 한다.

- SPC 장기차입금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차입일	적용금리	제4기	제3기
주택도시기금	2021.12.31.	1.572%	24,007,948	24,372,000
	2024.11.28.	1.572%	2,700,000	
공공자금관리기금(주1)	2021.12.31.	2.003%	2,708,000	2,708,000
합계			29,415,948	27,080,000
유동성 대체			872,111	397,902
장기차입금 잔액			28,543,837	26,682,098

※ 대진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 감사보고서 기준,

제4기(2024.03.01.~2025.02.28.), 제3기(2023.03.01.~2024.02.28.)

(주1) 2021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금리의 경우 2021년도 때 인출일에 적용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금리를 적용하여 대주가 차주에게 통보한 이자율을 사용하기로 하며, 2028년, 2035년에 적용되는 금리는 해당년도 1분기에 적용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금리가 적용되고, 이때 결정된 금리가 해당 적용기간 동안 적용됨.

적용기간	적용금리(연 이율)
2021년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021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금리 + 0.072%
2028년 1월부터 2034년 12월까지	2028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금리 + 0.072%
2035년 1월부터 2044년 12월까지	2035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금리 + 0.072%

- 이 상 -

간서명	김 옥	한민희	노기팔
-----	-----	-----	-----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불용 처리

1) 자산계정 불용처리

- 불용품 내역: 계수기 등 4,204점

계정(등록금)	수량	구입금액(원)	비고
기계기구매입비	1,469	1,964,296,077	재활용 불가능 자산
집기비품매입비	2,735	310,465,794	
합계	4,204	2,274,761,871	

2) 비자산계정 불용처리

- 불용품 내역: 낙뢰방지기 등 9점

계정(등록금)	수량	구입 금액(원)	비고
산학협력단전출금	8	104,640,000	재활용 불가능 자산
장비관리비	1	6,000,000	
합 계	9	110,640,000	

- 이 상 -

간서명	김옥	한민희	노기팔
-----	----	-----	-----